

웅진군의회

조례입법정책 최종연구보고서

이 보고서를 웅진군의회 조례입법정책
최종연구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20. 12. 14.

대한민국 지방정책을 선도하는

아카원

목 차

제1편 총설	1
1. 추진근거	2
2. 추진내용 및 목적	2
3. 개요	2
4. 조례입법정책 주요일정	3
5. 2020우선적 정비대상 자치법규 선정(19건)	5
6. 연구활동 개요	6
7. 연구용역 수행 및 내용, 연구 참여자	8
8. 우선적 조례입법 대상 선정	9
9. 2020년 이후 조례입법 정책 방향	10
제2편 조례입법 연구자료(최종보고)	00
10. 연구번호201 용진군의회 기본 조례 제정조례안	00
11. 연구번호202 용진군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0
12. 연구번호203 용진군 성년후견제도 이용지원조례 제정조례안	00
13. 연구번호204 용진군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웰다잉(Well-dying)문화조성조례안	00
14. 연구번호205 용진군 범죄예방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0
15. 연구번호206 용진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00
16. 연구번호207 용진군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조례 제정조례안	00
17. 연구번호208 용진군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0
18. 연구번호209 용진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00
19. 연구번호210 용진군 고용상의 차별행위 금지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	00
20. 연구번호211 용진군 군민의 날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0
21. 연구번호212 용진군 경로당 지원 조례 제정조례안	00
22. 연구번호213 용진군 환경 기본 조례 제정조례안	00
23. 연구번호214 용진군 결산검사위원선임 및 운영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0
24. 연구번호215 용진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0
25. 연구번호216 용진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0
26. 연구번호217 용진군 문화시설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0
27. 연구번호218 용진군 문화예술진흥조례 제정조례안	00
28. 연구번호219 용진군 인성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	00

「용진군의회 조례입법정책」 최종연구보고서

「조례입법정책연구」 운영을 통하여, 군민 체감도 높은 입법정책업무연찬을 실시하였고, 조례입법 선진사례 고찰 등 자치 입법역량을 획기적으로 강화하며, 지방자치 입법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 토대를 마련하는 계기가 됨.

I 추진근거

-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II 추진내용 및 목적

- 건강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의원 조례입법정책연구단체」를 운영하여 **자치입법 역량강화 및 지방자치 활성화에 기여.**
- 군민 - 의회가 함께하는 생활정치 자치입법 실현
- 조례입법에 관하여 심도 깊은 업무 연찬 및 집중 검토 등 토론식 의견을 나눔으로써 조례의 완성도 및 만족도 상승

III 개요

- 사업기간** : 2020. 10. 14. ~ 2020. 12. 14.
- 사업대상**
 - 의원 : 조례입법정책연구단체 소속 의원

□ 사업추진주요내용



IV 조례입법 정책연구 주요 일정

- 일 정 : 2020. 10. 14. ~ 12. 14.
- 장 소 : 의회
- 핵 심 : - 조례입법 정책 추진.
 - 조례입법 역량강화를 위해 입법이해도를 높이고 다양한 선진사례를 집중 학습 등을 통하여 취득. 입법 의정 핵심역량 배양함.

“조례입법은 주민의 삶에 큰 영향을 준다” 는 공감대로 입법중요성 고취
“조례입법은 지역의 미래비전이다” 는 기본인식과 조례에 대한 친근성 및
관심도 제고

제1차 : 10. 14. ~ 10. 31.

(사업 착수보고회 2020.10.14./10.20. 의회)

- ▶ 의원 정책연구단체 연구 착수보고
- ▶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및 조례입법 정책 검토
- ▶ 조례입법, 주민의 삶의 질을 바꾼다! ▶ 우수조례 살펴보기

제2차 : 11. 01. ~ 11. 20.

(2차보고 2020.11.04. / 11.17. 비대면 영상ZOOM)

- ▶ 조례입법 관련 역량강화를 위한 중간보고
- ▶ 조례 입법 집중 분야 선정 ▶ 조례입법 기본현황 바로알기
- ▶ 조례 정비대상 조례입법 집중검토
(의회발전분야, 생태·문화·복지·관광분야)

제3차 : 11. 21. ~ 11. 30.

(3차보고 2020.11.21. / 비대면 영상ZOOM)

- ▶ 조례입법 분석 및 보완 제·개정 시안 작성

제4차 : 2020. 12. 01. ~ 12. 14.

(4차보고 2020.12.09. / 제출 2020.12.13.)

- ▶ 최종 연구보고서 작성 및 제출

중점 조례입법 추진

(의회 · 생태 · 문화 · 복지 · 아동 · 여성분야 중심)

1. 용진군의회 기본 조례 제정조례안
2. 용진군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용진군 성년후견제도 이용지원조례 제정조례안
4. 용진군 호스피스 · 완화의료 및 웰다잉(Well-dying)문화조성에 관한 제정조례안
5. 용진군 범죄예방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용진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7. 용진군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조례 제정조례안
8. 용진군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용진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0. 용진군 고용상의 차별행위 금지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
11. 용진군 군민의 날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용진군 경로당 지원 조례 제정조례안
13. 용진군 환경 기본 조례 제정조례안
14. 용진군 결산검사위원선임 및 운영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용진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16. 용진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용진군 문화시설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용진군 문화예술진흥조례 제정조례안

19. 용진군 인성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

※ 조례안 별첨

※ 의회입법, 의회정책, 의회윤리, 감사, 고용정책, 주민생활, 복지, 아동, 청소년, 여성, 문화예술 관광, 체육, 생태환경정책, 도시정책, 주택, 행정, 회계, 안전, 교육 등 행정 각 분야

1. 연구활동 개요

(1) 연구용역(과업) 목적

- 건강한 지방자치 발전과 정책개발을 위해 발족된 의원연구단체(용진군의회 조례입법연구단체)에서 의원 입법역량을 강화하고 자치입법을 중점 검토하여 이를 개선하고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자 함.
- 각종 조례 중 주민들의 불편한 사항, 복잡한 행정절차, 현행 조례가 개정되지 않아 현행법령에 모순 또는 저촉되는 사항 등을 파악하여 정비를 통해 법제도의 현실화 및 선진화를 구현.
- 다른 조례의 조문이 서로 상충되거나, 동일 조례상의 조문 간 충돌 및 해석상 논란이 되는 조문의 정비, 유사 조례의 통·폐합 및 실효성이 없는 조례의 정비로 자치법규의 공정성, 객관성, 합리성을 꾀하고, 법적 안정성을 확보.

(2) 연구공정

- 2020. 10. 14. ~ 10. 31.
 -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및 조례입법 정책 검토
 - 사업 착수보고회(의회 조례입법연구단체 의원)
- 2020. 11. 01. ~ 11. 20.
 - 자치법규 관련 의원 역량강화를 위한 집중 업무 연찬
 - 조례 입법 분야 선정
 - 조례 정비대상 조례입법 집중 검토
- 2020. 11. 21. ~ 11. 30.
 - 조례 입법 분석 및 제·개정 시안 작성
 - 조례입법의 보완 및 개정시안 확정
- 2020. 12. 01. ~ 12. 14.
 - 조례입법 정책사업 완료 보고(의회 조례입법연구단체)
 - 최종연구보고서 최종 점검, 인쇄 및 제출

2. 연구용역 수행 및 내용, 연구 참여자

(1) 연구용역 수행

- 연구용역 수행을 입법 및 법제분야에서 장기간 근무 및 경력을 가지고 있는 연구자가 연구용역 사업을 수행하여 연구의 질과 효과를 높임.
- 현재 입법 등 전문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검토 방향 및 대안제시의 적정성과 타당성을 높임.
- 조례는 단순히 규범으로서의 조문의 의미를 넘어 행정에 관한 기본정책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규범적 법 체계적인 접근과

함께 보다 합당하고 발전적인 정책대안을 개발하고 이를 반영하는데 연구의 중점을 두었음.

- 의정활동의 중심인 조례입법 부문의 의원 역량강화를 위해 입법 이해도를 높이고 다양한 선진사례 등을 집중 학습 등을 통하여 취득하게 하였고 입법활동에 기여할 수 있는 의정실력을 배양함.

연구참여자

성명	직책	학력 및 경력	역할 및 기능
박광호	책임 총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남대학교행정대학원석사졸업 (지방자치전공) • 한국지방자치연구원장 • 대통령소속지방분권위원회 정책자문위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 총괄 및 강의 • 조례입법 검토 및 선정 • 조례입법 연구수행 • 조례입법 시안 최종 검토
박래식	연구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독일 함부르크대학교 학석박사 • 아카원 대표이사 • 국가정보원 대학원 외래교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례입법 검토 및 분석 • 사업 추진 사무 총괄 • 보조연구원 조례입법자료 검토
윤승중	연구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전라남도 자치행정국장 	
배수현	연구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려대학교 학석사 • 독일 훔볼트대학교 정치외교학 박사과정 수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서작성 등 연구보조업무 전반

(2) 연구용역 수행 내용

- 현행 조례의 합법성 및 합리성, 명확성 검토
 - 현행 조례를 분야별 유형별로 특성에 맞게 심층적으로 분석, 검토하여 문제점, 미비점, 보완점을 다각도로 도출하고 개정안을 명확히 제시함
 - 최근에 개정된 각종 위임법령에 따라 정비가 필요한 조례에 대한 정비방안 및 개정안을 제시
 - 현행 조례 간 상충되는 조항, 조례의 통·폐합이 필요한 사항 등을 찾아 제·개정시안 및 폐지 조례시안 제시함
- 조례의 기술적 측면 검토
 - 법령에 근거한 위임사무의 합법성 검토
 - 자치법규 내용의 합법성 확보 검토
- 조례개정이 필요한 사항의 존재 유무 확인 및 조례 제·개정시안 제시
 - 조례의 제정 및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조례시안 제시

3. 우선적 조례입법 대상 선정

(1) 선정 방향

- 현행 자치법규 중, 의회·생태·문화·아동분야를 중심으로 집중 검토하고 조례입법을 신속하고 폭넓게 추진함.
- 조례 중 본 연구사업의 추진 취지나 목적에 비추어 보완이 시급하거나 중요도가 높은 조례에 비중을 두고 그 중 우선적인 대상 자치법규를 선정하여 조례 검토 및 입법을 추진.

(2) 입법대상 선정 구체적 검토

- 법령이 개폐되었으나 정비되지 않아 법령에 위배되고 있는 조례
- 조례 제정 후 장기간 개정하지 않아 현실에 맞지 않거나, 인용 법령이 맞지 않는 조례
- 조례규정이 명확하지 않거나 조문간 상충으로 정비가 필요한 조례
- 유사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조례의 통·폐합 등

4. 금후 조례입법 정책 추진 방향

- 조례입법의 경우 조례의 다양성과 방대함에 비추어 단기간에 전면적으로 정비하는 것은 한계가 있음. 그러므로 충실한 분석과 검토, 합당한 보완 방안의 제시는 물론, 의회의 운영일정 등을 감안할 때 향후, 1년 정도에 걸쳐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현실적이고 적절한 방안이 될 것으로 판단됨.
- 2021년도 조례입법 정책연구 활동에 따른 의회의 「의원조례입법정책」은 지속 되어야 함에 따라 본 연구원과 협력체계 지속 구축이 필요함.

조례입법연구자료 (최종보고)

용진군의회 기본 조례 제정조례안

연 구 보 고

연구 번호	201
----------	-----

제출연월일 : 2020.11.06.
조례입법정책연구회

1. 연구이유

○ 용진군민에게 민주적 의회상을 구현하고, 의정활동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용진군의회 구성과 운영의 기본이 되는 사항을 규정하는 기본조례를 제정하여 의회의 위상을 높이고 주민의 신뢰도를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의원의 의정활동 원칙을 규정하여 군민전체의 대표로서 용진군의 균형적인 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목표로 활동 (안 제3조)
- 의회의 연간 회의 총일수는 정례회 및 임시회를 합하여 100일 이내로 명시.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일수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본회의 의결로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이를 연장 (안 제5조)
- 의장과 부의장은 의회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거하되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 (안 제14조)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시행령」

용진군의회의 기본 조례 제정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용진군민에게 열려있는 민주적 의회상을 구현하고, 의정활동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용진군의회의 구성과 운영의 기본이 되는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용진군의회의(이하 "의회"라 한다)는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군민의 대표로 구성되는 의결기관으로서의 지위를 확인하고 그 의사결정에 있어 민주성, 공정성, 합리성과 전문성을 기초로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효율적이고 민주적인 의회상을 확립하여야 한다.

제3조(의회의 의정활동원칙) ① 의회는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의사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하며 그 결과를 원칙적으로 군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② 의회는 다양한 주민의 의사를 수용하고 군민과 용진군의회의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창의적인 의견을 군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의회는 소속 의원들이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성을 확보하도록 지원하고 의회사무과의 자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의원의 의정활동원칙) ① 의원은 주민전체의 대표로서 용진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균형적인 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목표로 활동하여야 한다.

② 의원은 자유로운 의견개진과 토론의 기회를 가지며 다른 의원의 의견과 인격을 존중하여야 한다.

③ 의원은 「용진군의회의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및 「행동강령 조례」를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제2장 정례회 등 회기운영

제5조(연간 회의일수) 의회의 연간 회의 총일수는 정례회 및 임시회를 합하여 100일 이내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일수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본회의 의결로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이를 연장할 수 있다.

제6조(연간 의회운영 기본일정의 수립) 용진군의회의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연도의 연간 의회운영의 기본일정을 정하여야

한다.

제7조(회기) ① 의회는 정례회를 매년 2회 개최한다.

② 의회는 회기를 정하여 임시회를 운영하며 발의·제출된 안건을 처리한다..

③ 1차 정례회는 전년도 결산을 심의 결정하고 2차 정례회는 행정사무감사 실시와 다음연도 예산안을 심의·의결하고 그밖에 의회에 제출된 안건의 처리와 시장으로부터 다음 연도의 군정연설을 들을 수 있다.

제8조(정례회의 집회일) 「지방자치법시행령」 제54조에 따라 정례회를 개최·운영한다. 다만, 그 날이 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에 집회한다.

제9조(심의) ① 제1차 정례회에서는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4조에 따른 결산의 승인 및 그 밖에 회의에 부쳐진 안건을 심의·의결한다.

② 제2차 정례회에서는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행정사무감사의 실시와 법 제127조에 의한 예산안의 의결 및 그 밖에 회의에 부쳐진 안건을 심의·의결한다.

제10조(조례안 제출계획의 통지 등) ① 용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년 2월 말까지 해당연도에 제출할 조례안에 관한 계획을 의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그 계획을 변경한 때에는 분기별로 주요사항을 의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 의회는 군수에게 매분기별로 해당연도 예산집행실적 보고서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최초집회 및 개회식) ① 총선거후 의회의 최초집회일은 해당 의원임기 개시일로 한다. 이 경우 사무과장은 미리 소집공고를 할 수 있다.

②의회는 집회일에 개회식을 행한다. 다만, 임시회의 경우에는 필요에 따라 개회식을 생략할 수 있다.

③총선거후 최초의 임시회는 의장·부의장 선거후에 개회식을 행한다.

제3장 의회의 기관 등

제12조(의장의 직무) 의장은 의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회의장 내의 질서를 유지하고 의회의 사무를 감독한다.

제13조(의장·부의장의 임기) ①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총선거 후 처음 선출된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는 그 선출된 날부터 개시하여 의원의 임기개시후 2년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

② 의장선거일이 부의장선거일보다 먼저인 경우, 부의장의 임기는 의장의 임기와 같이 종료된다.

③ 총선거 후 처음으로 선출하는 의장·부의장 선거는 최초집회일에 실시하며, 처음 선출된 의장·부의장의 임기가 만료되는 때에는 그 임기만료일전 5일에 실시한다. 그러나, 그 날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 날에 실시한다.

④ 보궐선거로 당선된 의장 또는 부의장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14조(의장·부의장의 선거) ① 의장과 부의장은 의회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거하되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② 제1항의 득표자가 없을 경우에는 2차투표를 하고 2차투표에서도 제1항의 득표자가 없을 경우에는 최고득표자가 1명이면 최고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최고득표자가 2명 이상이면 최고득표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하여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③ 제2항의 결선투표결과 득표수가 같을 경우에는 최다선의원을, 최다선의원이 2명 이상일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④ 부의장은 의장의 선거가 끝난 후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방법으로 선거한다.

⑤ 의장과 부의장 선거에 입후보하려는 의원은 선거일 2일전까지 “별지1호서식”에 의거 의회사무과에 소견발표신청을 하여야 하며 소견발표시간은 5분이내로 한다. 다만, 2일전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이전 관공서의 정상 근무일까지로 한다.

제15조(부의장의 의장직무대리) ① 의장이 여행, 질병, 휴가, 경조사나 법 제 70조의 제척 등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② 부의장의 의장직무대리는 의장의 직무권한 모든 것에 미치는 것이 아니고 의회운영에 필요한 한도내에서만 대리할 수 있다.

③ 부의장의 의장직무대리 기간은 의장의 사고발생이나 의장이 지정하는 시각부터 의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될 때까지로 한다.

제16조(보궐선거) 의장이나 부의장이 궐위된 경우에는 보궐선거를 실시한다.

제17조(임시의장의 선거) ①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임시의장을 선출하여 의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한다.

② 임시의장의 선거는 의장·부의장의 선거의 예에 따른다.

제18조(의장·부의장의 사임) ① 의장과 부의장은 의회의 동의를 받아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② 사임에 대한 동의 여부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표결한다.

제19조(의장·부의장의 겸직제한) 의회의 다른 직을 겸한 의원이 의장 또는 부의장으로 당선된 경우에는 당선된 날에 그 직에서 해직된 것으로 본다.

제20조(사무과) ① 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의회에 사무과를 둔다.

제4장 의원

제21조(등록) 의원 당선인은 당선인으로 결정된 후 당선증서를 사무과에 제시하고 등록하여야 한다.

제22조(의석배정) 의원의 의석은 의장을 향하여 앞줄 왼쪽부터 초선·재선 다선 의원순으로 배정하되, 당선 횟수가 같은 의원은 연소자순으로 배정한다. 다만, 의장단은 별도 배정할 수 있다.

제23조(선서) 의원은 임기초에 의회에서 다음의 선서를 한다. "나는 법령을 준수하고 주민의 권익신장과 복리증진 및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주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제24조(의원의 청가 및 결석) ① 의원은 사고로 의회에 출석하지 못하였거나, 못할 경우에는 그 이유와 기간을 기재한 청가 및 결석계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임신 중의 여성의회원이 청가 및 결석계를 의장에게 제출하는 경우 그 출산의 전후로 90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전후 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휴가기간은 출산 후에 45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게 하여야 한다.

③ 그 밖의 의원의 청가 및 결석에 관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제25조(의원의 사직) ① 의회는 그 의결로 의원의 사직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폐회 중에는 의장이 이를 허가할 수 있다.

② 의원이 사직하고자 할 경우에는 본인이 서명·날인한 사직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사직의 허가여부는 토론 없이 표결한다.

④ 의원은 제출한 사직서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 또는 의장의 허가가 있기 전까지 철회할 수 있다.

제26조(청구서의 위원회회부와 답변서 제출) ① 의장은 법 제79조에 따라 의원의 자격심사 청구가 있을 경우에는 그 자격심사청구서를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

② 피심의원이 천재지변 또는 질병과 그 밖의 사고에 의하여 기일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못함을 증명한 경우에는 의장은 다시 기일을 정하여 답변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27조(청구서와 답변서의 위원회 심사 등) ① 의장이 피심의원의 답변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

② 윤리특별위원회는 자격심사청구서와 답변서에 의하여 심사하고 심사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한다. 이때 의장은 이를 본회의에 부쳐야 한다.

③ 의장은 본회의에서 자격상실 의결이 있을 경우에는 그 결과를 청구의원과 피심의원에게 송부한다.

제28조(당사자의 심문과 발언) ① 윤리특별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 의장을 거쳐 청구의원과 피심의원을 출석하게 하여 심문하거나 변명하게 할 수 있다.

② 청구의원과 피심의원은 윤리특별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이 경우 피심의원은 다른 의원에게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③ 피심의원은 본회의에서 스스로 변명하거나 또는 다른 의원에게 변명하게 할 수 있다.

제5장 위원회와 위원

제29조(위원회의 설치) 의회에 특별위원회를 둔다.

제30조(특별위원회의 직무) 특별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의안 등을 심사처리하는 직무를 행한다.

제36조(특별위원회) ① 의회는 안건을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의회의 의결로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특별위원회는 활동기간의 종료시까지 존속한다. 다만, 활동기간의 종료시까지 안건이나 활동결과보고서를 제출할 경우에는 해당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

③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중 연속하여 3개월 이상 회의가 열리지 아니하는 때에는 본회의 의결로 특별위원회의 활동을 종료시킬 수 있다.

④ 특별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그 위원회의 존속기간으로 한다.

⑤ 특별위원회는 그 위원회의 활동기간이 종료하기 전까지 활동결과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하고, 의장은 의회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⑥ 특별위원회는 활동기간을 연장하고자할 경우 활동기간이 종료하기 15일전까지 특별위원회의 활동에 관한 중간보고서 및 활동기간 연장 사유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 특별위원회의 원활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의정운영공통경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특별위원회 경비 지급 기준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정한다.

제37조(예산결산특별위원회) ① 예산안·결산·기금운영계획안 및 기금결산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둔다.

②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선임된 날부터이고, 위원회 활동기간중 심사한 안건에 대해서는 활동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8조(윤리특별위원회) ① 의원의 자격심사·윤리심사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둔다.

②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은 선임된 날부터 1년간 재임하고, 위원회 활동기간중 심사한 안건에 대해서는 활동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9조(특별위원회 위원장) ① 특별위원회에 위원장 1명을 두되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한다.

②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위원 중 최다선의원이, 최다선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그 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 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제40조(위원의 선임 및 개선)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한다.

제41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질서를 유지하고 사무를 감독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사일정과 개최일시를 정한다.

제42조(간사) ① 위원회에는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한다.

③ 위원장에게 사고가 있을 경우에는 간사는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하며 간사가 사고가 있을 때에는 출석위원 중 최다선위원이 직무를 대리한다.

제43조(소위원회) ① 위원회는 효율적인 안전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는 심사를 마친 경우에는 소위원회 위원장은 그 심사경과와 결과를 소관위원회에 보고한다.

제45조(전문위원과 공무원) ① 위원회에 위원장 및 위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문위원과 필요한 공무원을 둔다.

② 전문위원은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위원회에서 발언할 수 있으며 본회의에서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발언할 수 있다.

제46조(전문가의 활용) ① 위원회는 그 의결로 중요한 안전 또는 전문지식을 요하는 안전의 심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안전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이하 "전문가"라 한다)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위원회가 제1항에 따른 전문가를 활용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장이 의장에게 이를 요청하고, 의장은 예산사정 등을 감안하여 그 인원 또는 활용기간 등을 조정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 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일비 등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지급기준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정한다.

제47조(공청회 및 토론회) ① 위원회는 안전의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공청회를 개최하여 국민, 이해관계자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

견을 들을 수 있다.

② 의회는 의원 등이 군민의 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 등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토론회(세미나, 발표회, 심포지엄 등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방식을 말한다)를 개최하여 주민, 이해관계자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48조(입법·법률고문) ① 의회의 입법업무와 법률사안의 각종 자문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입법·법률고문을 위촉·운영할 수 있다.

② 이 조례에 정한 사항 외의 입법·법률고문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옹진군의회 입법정책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6장 군수 또는 관계공무원의 출석답변 등

제49조(군수 등의 출석요구) ① 본회의는 그 의결로 군수 또는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의는 의원 5분의 1 이상의 이유를 명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그 의결로 의장을 경유하여 군수 또는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군수 또는 관계공무원은 출석·답변하여야 하며, 군수가 출석요구를 받은 경우 출석할 수 없는 사유가 있거나, 답변의 충실을 위하여 관계공무원의 대리출석이 필요한 때에는 그 사유서를 의장에게 사전 제출한 후에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대리 출석·답변하게 할 수 있다.

제50조(군정에 대한 질문) ① 본회의는 회기 중 기간을 정하여 군정전반 또는 군정의 특정분야를 대상으로 집행기관에 대하여 질문(이하 "군정질문"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② 군정질문은 일문일답 또는 일괄질문·일괄답변 방식으로 하되, 이중 어느 하나의 방식을 선택하여야 하며, 질문순서는 일문일답 방식이 일괄질문·일괄답변 방식에 우선한다.

③ 일문일답의 경우 의원의 질문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40분을 초과할 수 없다.

④ 일괄질문·일괄답변의 경우 질문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의장은 의원의 질문과 집행부의 답변이 끝난 후 필요한 경우 10분이내의 보충질문을 허가할 수 있다.

⑤ 질문을 하지 않은 의원의 보충질문은 질문을 한 의원의 양해를 구하여 의

원당 1회 5분만 할 수 있다.

⑥ 질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미리 질문의 요지와 질문방식을 기재한 질문요지서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의장은 질문내용이 의원 간에 서로 중복되지 않도록 조율한 후 늦어도 군정질문 시간 48시간 전(이 경우 휴무·공휴일은 제외한다)까지 질문요지서가 군수에게 도달되도록 송부해야 한다.

제51조(군수에 대한 서면질문) ① 군수에게 서면으로 질문하려고 할 때에는 질문서를 의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의장은 지체없이 이를 군수에게 이송한다.

② 군수는 질문서를 받는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답변해야 한다. 이 기간 내에 답변하지 못할 때에는 그 이유와 답변할 수 있는 기한을 의장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답변에 보충질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서면으로 다시 질문할 수 있다.

제52조(군수 등의 발언) 군수 또는 관계공무원이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발언하려고 할 때에는 미리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53조(긴급현안질문) ① 의원은 2명 이상의 찬성으로 회기중 현안이 되고 있는 중요한 사항을 대상으로 집행부에 대하여 질문(이하 "긴급현안질문"이라 한다)을 할 것을 의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긴급현안질문을 요구하는 의원은 그 이유와 질문요지 및 출석을 요구하는 관계공무원을 기재한 질문요구서를 본회의 개의 24시간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긴급현안질문시간은 총 60분으로 한다. 다만, 의장은 부의장과 협의하여 이를 연장할 수 있다.

④ 긴급현안질문을 할 때의 의원의 질문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20분을 초과할 수 없다.

⑤ 긴급현안질문의 절차 등에 관하여 제53조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군정질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54조(서류제출요구) 의회는 법 제40조 및 41조 제4항에 따라 서류의 제출을 군수에게 요구할 수 있다.

제55조(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① 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하여 행정

사무감사를 실시하고, 행정사무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이 조례에 정한 사항 외의 행정사무감사와 행정사무조사에 관한 사항은 「용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56조(중기지방재정계획 등의 보고) 「지방재정법」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제4항의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수립에 따른 의회 보고는 본회의 보고를 원칙으로 한다.

제57조(예산안 및 예산집행상황의 제출 등) ① 군수는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세입예산의 징수현황 및 사업별 세출예산의 집행상황을 반기별로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예산 전용을 결정하였을 때에는 이를 분기별로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58조(조례상 보고 등) 군수는 법령 또는 조례에서 의회에 보고하도록 한 사항에 대해 보고의 건으로 보고시기와 가장 가까운 회기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보고시기가 폐회 중일 때는 의장에게 우선 보고한 후 다음 회기 회의에서 안건으로 상정하여 보고한다.

제59조(의회의 예산) 군수는 의회의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의장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

제60조(회의록) ① 의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다음 사항을 기재한다.

1. 개회·폐회에 관한 사항
2. 개의·회의중지·산회의 일시
3. 의사일정
4. 출석의원의 성명 및 수
5. 출석공무원의 직과 성명
6. 의원의 이동과 의석의 배정·변동
7. 제반보고사항
8. 의안의 발의·제출·회부·환부·이송과 철회에 관한 사항
9. 회의에 부쳐진 안건과 그 내용
10. 의사

11. 표결수, 전자투표의 투표자 및 찬반의원 성명
12. 서면질문과 답변서
13. 의원의 발언보충서
14. 그 밖에 본회의의 의결 또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발언자의 발언에 관한 기록은 발언내용 전부를 그대로 기록한다.
 - ③ 본회의의 의사는 속기방법으로 이를 기록한다.
 - ④ 속기방법에 의하여 작성한 회의록의 내용은 삭제할 수 없으며, 발언을 통하여 자구정정 또는 취소의 발언을 한 경우에는 그 발언을 회의록에 기재한다.
 - ⑤ 임시회 회의록은 각 회기가 끝난 날부터 30일(정례회는 40일) 이내에 의회 전자회의록 시스템에 게재하여 일반에게 공개한다.

제7장 질서와 경호

- 제61조(경호)** ① 의장은 의회의 경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부의장과 협의를 거쳐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관할경찰관서에 경찰관의 파견을 미리 요구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경찰관은 의장의 지휘를 받아 회의장 밖에서 경호한다.
 - ③ 그 밖의 의회의 경호에 관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제62조(회의의 질서유지) ① 의원은 회의장에서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이나 의회의 위신을 손상시키는 언동
 2. 의사진행을 지연시키거나 방해할 목적으로 신문, 잡지, 간행물, 그 밖의 문서를 낭독하는 행위
 3. 의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이석
 4. 의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료, 문서 등의 인쇄물 배포 및 녹음녹화 촬영행위
 5. 음식물을 먹거나 담배를 피우는 행위
 6. 회의와 관계없는 물품의 휴대 반입
 7. 본회의장 의장석 또는 위원회 회의장 위원장석 점거
- ② 의장 또는 위원장은 제1항을 위반하는 의원에게는 당일의 회의에서 발언을 금지하거나 회의장에서 퇴장시킬 수 있다.
 - ③ 의장 또는 위원장은 회의장이 소란하여 질서를 유지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회의를 중지하거나 산회를 선포할 수 있다.
 - ④ 의장 또는 위원장은 군수 또는 집행부 공무원이 제1항제1호에 따른 행위를

할 경우에는 당일의 회의에서 발언을 금지하거나 회의장에서 퇴장시킬 수 있다.

제63조(의장, 위원장의 제지에 복종하지 아니하는 의원) 회의장 안에서 의장 또는 위원장의 경고, 제지 또는 발언취소에 따르지 아니하는 의원에게는 징계 대상자로서 특별위원회 또는 본회의에 부칠 수 있다.

제64조(회의장 출입의 제한 등) ① 회의장에는 의원, 의사 및 의안심의에 필요한 사람과 허가받은 사람 이외에는 출입할 수 없다.

② 누구든지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기 위하여 본회의장 또는 위원회 회의장에 출입하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5조(방청) ① 의장은 방청권을 발행하여 방청을 허가할 수 있다.

② 그 밖의 방청에 관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제66조(녹음, 녹화, 촬영, 중계방송 등) 본회의 및 위원회에서의 녹음, 녹화, 촬영, 중계방송 등에 관한 사항은 의회 회의규칙으로 정하거나 의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연 구 보 고

연구 번호	202
----------	-----

2020. 11. 06.
조례입법정책연구회

1. 연구경위

- 2020. 11. 06. 조례입법정책연구회 연구(2020. 11. 06. 회부)

2. 연구이유

- 현행 조례에서는 지방자치법 제62조에 따라 특별위원회의 설치 근거와 위원 정수, 활동 관련 소관에 속하는 청원 등 사무를 처리하는 직무에 관한 내용을 적시하고 있음.
- 그러나, 조례 제2조 제1항(청원심사), 3항(예산결산)에 대한 업무와 지방분권 등에 따른 민주적 시민의견 수렴 절차 등에 관한 조항을 보장하여 지방자치정신을 더욱 높이고자 함.

3. 주요내용

- 특별위원회 활동에 따른 전문가 자문, 주민의견수렴 절차에 관한 조항을 추가하여 효율적 위원회 운영 도모.

<위원회 설치 및 활동>(안 제2조)

현 행	개 정 안
제2조(위원회의 설치) ① 생략 ② 생략 ③ 생략 ④ 생략 <신설>	제2조(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④ (현행과 같음) <u>⑤위원회 소관의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위하여 전문가의 자문, 주민의견수렴활동 등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u>

용진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용진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설치) ① 의회는 재해대책, 청원심사 및 중요조례안 심사 등 특정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본회의의 의결로써 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의회는 의원의 윤리심사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둔다.

③ 의회는 예산안과 결산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둔다.

다만, 의원 정수가 특히 적어 특별위원회의 설치운영이 용이하지 않을 경우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두지 않을 수도 있다.

④ 제1항 내지 제 3항의 위원회는 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존속한다.

(개정안) 제2조(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① 의회는 재해대책, 청원심사 및 중요조례안 심사 등 특정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본회의의 의결로써 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의회는 의원의 윤리심사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둔다.

③ 의회는 예산안과 결산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둔다.

다만, 의원 정수가 특히 적어 특별위원회의 설치운영이 용이하지 않을 경우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두지 않을 수도 있다.

④ 제1항 내지 제 3항의 위원회는 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본회의

에서 의결될 때까지 존속한다.

⑤ 위원회 소관의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위하여 전문가의 자문, 주민의견수렴활동 등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위원장) ① 위원회의 위원장 1인을 두되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서 보고한다.

②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중 최다선의원이, 최다선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이 경우 직무를 대행하는 위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직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다음 순위의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은 그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제4조(위원) 위원회의 위원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의 의결로 선임한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결정하며 질서를 유지하고 사무를 감독한다.

제6조(간사) ① 위원회에는 간사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이를 본회의에 보고한다.

③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간사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한다.

제7조(소위원회) ① 위원회는 효율적인 안건 심사를 위해 필요한 때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때에는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심사경과와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한다.

제8조(준용규정)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외의 위원회의 운영·의사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용진군의회 회의규칙을 준용한다.

부 칙

이 조례는 의회의 최초집회일부터 시행한다.

용진군 성년후견제도 이용지원조례
제정조례안

연 구 보 고

연구 번호	203
----------	-----

2020년 11월 06일
조례입법정책연구회

1. 제안이유

- 성년후견제도 이용 활성화를 도모하여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결여되거나 부족한 용진군민이 자기결정권을 보장받고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성년후견제도 이용 적극홍보 및 지원 (안 제3조)
- 나. 성년후견제도 이용 지원계획 수립 (안 제4조)
- 다. 성년후견제도 이용 지원 대상 (안 제6조)
- 라. 성년후견제도 이용 지원 사업 (안 제7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치매관리법」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민법」
- 나. 예산조치 : 해당 없음
- 다. 기 타 : 제정조례안

용진군 성년후견제도 이용지원조례 제정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성년후견제도 이용 활성화를 도모하여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결여되거나 부족한 용진군민이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성년후견제도”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되거나 부족하여 후원이 필요한 성인을 위하여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하여 지원되는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 등 일체의 법정 후견 제도를 말한다.
2. “공공후견인”이란 가족이 아니면서 피후견인을 위하여 신상보호 등 각종 성년후견활동을 자원봉사 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전문가후견인”이란 변호사, 법무사, 사회복지사, 세무사, 회계사 등 전문자격을 가진 자로서 가정법원으로부터 후견인 등으로 선임된 개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용진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후견이 필요한 군민이 자기결정권을 존중받을 수 있도록 성년후견제도의 이용을 적극 홍보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제4조(성년후견제도 이용 지원계획) 군수는 성년후견제도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용진군 성년후견제도 이용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5조(실태조사) 군수는 용진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성년후견제도 수요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할 수 있다.

제6조(지원 대상)성년후견제도 이용 지원 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성년후견제도 이용지원 대상 발달장애인
2. 「치매관리법」 제12조의3에 따른 성년후견제도 이용지원 대상 치매환자
3. 「민법」에 따라 가정법원에 후견 심판을 청구하는 미성년자 또는 가정법원에서 후견개시 심판을 받은 미성년자
4. 그 밖에 군수가 성년후견제도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7조(성년후견제도 이용 지원 사업) ① 군수는 성년후견제도 이용 촉진 및 지원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공공후견인, 전문가후견인 양성을 위한 교육
 2. 성년후견제도에 대한 인식개선 등 홍보 사업
 3. 성년후견제도가 필요한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 사업
 4. 다음 각 목에 따른 상담 지원
가. 일반상담 : 성년후견제도 관련 전화, 대면 상담 등
나. 전문상담 : 변호사, 법무사, 사회복지사, 세무사, 회계사 등에 따른 성년후견 관련 법률, 복지 등 전문지식 관련 대면 상담
 5. 그 밖에 군수가 성년후견제도 이용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② 군수는 제1항제1호에 따른 교육을 이수한 사람에게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발급할 수 있다.
- ③ 군수는 효율적 추진을 위해 지원 사업을 관련 법인·단체 및 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예산지원) 군수는 지원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성년후견제도 이용 지원사업 운영위원회) 군수는 성년후견제도 이용 지원사업을 심의하기 위하여 “성년후견제도 이용 지원사업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 를 둘 수 있다.

제10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1. 성년후견제도 이용 지원계획에 관한 사항
2. 성년후견제도 이용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성년후견제도 이용 지원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1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 7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당연직 위원은 성년후견제도 관련 업무담당 실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용진군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1인
 2. 전문가후견인, 성년후견감독인 등 성년후견에 대한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3. 성년후견 관련 교수, 연구자 등 성년후견제도 전문가
 4. 그 밖에 군수가 위원으로 위촉함이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12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에 한정하

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② 당연직 위원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③ 위촉직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을 받거나, 장기간 불출석 등의 사유로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위촉 해제할 수 있다.

제13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정기회의는 매년 1회 이상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안건이 시급하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회 소집이 어렵다고 인정될 때 또는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여 회의를 소집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서면회의를 통하여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5조(위원회의 간사, 회의록)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소관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③ 간사는 회의록을 관리하여야 한다.

제16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용진군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웰다잉(Well-dying)문화조성에 관한 제정조례안

연 구 보 고

연구 번호	204
----------	-----

제출연월일 : 2020.11.06.
조례입법정책연구회

1. 연구이유

- 핵가족화의 가속화로 인하여 고독사를 맞이하는 노령자 등이 증가함에 따라 존엄한 죽음을 보장하기 위한 필요성이 증가되고 있고, 웰 다잉(Well-Dying) 문화조성을 통하여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 및 안 제2조)
-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웰 다잉 문화조성에 대한 군수의 책무를 규정(안 제3조)
-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웰 다잉 문화조성 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규정(안 제4조 및 안 제5조)
-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웰 다잉 문화조성 지원·협력체계·호스피스 날·비밀의 유지·적용(안 제6조 ~ 안 제9조)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4. 따로붙임

○ 용진군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웰 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
안

○ 관계법령

용진군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웰다잉(Well-dying)문화조성에 관한 제정조례안

1조(목적) 이 조례는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 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5조에 근거하여 임종과정 및 말기(末期)의 환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받을 수 있도록 호스피스·완화의료의 기반을 구축하고 웰다잉(Well-Dying) 문화를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호스피스·완화의료”란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6호 각목의 질환으로 임종과정 또는 말기에 있는 환자와 그 가족에게 통증과 증상의 완화 등을 포함한 신체적, 심리사회적, 영적 영역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와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의료를 말한다.
2. “임종과정”이란 회생 가능성이 없고, 치료에도 불구하고 회복되지 아니하며, 급속도로 증상이 악화되어 사망에 임박한 상태를 말한다.
3. “말기환자”란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근원적인 회복의 가능성이 없고 점차 증상이 악화되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기준에 따라 담당의사와 해당 분야의 전문의 1명으로부터 수개월 이내에 사망할 것으로 예상되는 진단을 받은 환자를 말한다.
- 4 “웰다잉(Well-Dying) 문화”란 죽음을 스스로 미리 준비하여 살아온 날을 아름답게 정리하는 문화를 말한다.
5.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군수의 책무) 용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임종과정 및 말기

환자의 존엄과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웰다잉 문화조성 사업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환자와 그 가족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사업의 추진) 군수는 호스피스와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호스피스 서비스 제공 및 지원체계 구축
2. 호스피스 전문인력 교육 및 훈련 지원
3. 호스피스 및 웰다잉 문화조성 및 확산을 위한 교육 및 홍보
4. 호스피스 및 웰다잉에 대한 인식개선과 문화 확산을 위한 사업
5. 그 밖에 호스피스 및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지원) ① 군수는 제4조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법 제11조, 제24조, 제25조에 따른 전문기관 및 관계기관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웰다잉 문화조성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및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자문위원회 설치 등) ① 군수는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웰다잉(Well-dying)문화조성에 관한 시책을 자문하기 위하여 ‘호스피스 및 웰다잉문화조성자문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7인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부군수가 되고 위촉 위원은 용진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1인, 의료단체, 종교단체, 봉사단체 등에서 추천하는 각 1인을 군수가 위촉한다.

④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7조(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보궐 위촉하는 위촉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을 때
2. 위원이 건강 등 일신상의 사유로 해촉을 원할 때
3. 그 밖에 위원으로서 계속 활동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회의) 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② 회의는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

1. 호스피스 서비스 제공 및 지원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2. 호스피스 및 웰다잉 문화조성 및 확산을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3. 호스피스 및 웰다잉에 대한 인식개선과 문화 확산을 위한 사업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협력체계의 구축) 군수는 호스피스 및 웰다잉 문화조성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3조(호스피스의 날) 군수는 호스피스의 날의 취지에 부합하는 호스피스 및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한 행사와 교육·홍보를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4조(비밀의 유지) 이 조례에 따라 호스피스 및 웰다잉 문화조성사업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업무 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5조(적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호스피스 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약칭: 연명의료결정법)

제1조(목적) 이 법은 호스피스·완화의료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와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그 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환자의 최선의 이익을 보장하고 자기결정을 존중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임종과정"이란 회생의 가능성이 없고, 치료에도 불구하고 회복되지 아니하며, 급속도로 증상이 악화되어 사망에 임박한 상태를 말한다.
2.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란 제16조에 따라 담당의사와 해당 분야의 전문의 1명으로부터 임종과정에 있다는 의학적 판단을 받은 자를 말한다.
3. "말기환자(末期患者)"란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근원적인 회복의 가능성이 없고 점차 증상이 악화되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기준에 따라 담당의사와 해당 분야의 전문의 1명으로부터 수개월 이내에 사망할 것으로 예상되는 진단을 받은 환자를 말한다.
4. "연명의료"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하는 심폐소생술, 혈액 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학적 시술로서 치료효과 없이 임종과정의 기간만을 연장하는 것을 말한다.
5.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이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 대한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아니하거나 중단하기로 하는 결정을 말한다.
6. "호스피스·완화의료"(이하 "호스피스"라 한다)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환으로 말기환자로 진단을 받은 환자 또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이하 "호스피스대상환자"라 한다)와 그 가족에게 통증과 증상의 완화 등을 포함한 신체적, 심리사회적, 영적 영역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와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의료를 말한다.

가. 암

나. 후천성면역결핍증

다. 만성 폐쇄성 호흡기질환

라. 만성 간경화

마.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질환

7. "담당의사"란 「의료법」에 따른 의사로서 말기환자 또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이하 "말기환자등"이라 한다)를 직접 진료하는 의사를 말한다.

8. "연명의료계획서"란 말기환자등의 의사에 따라 담당의사가 환자에 대한 연명의료 중단등결정 및 호스피스에 관한 사항을 계획하여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작성한 것을 말한다.

9. "사전연명의료의향서"란 19세 이상인 사람이 자신의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호스피스에 관한 의사를 직접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작성한 것을 말한다.

제5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환자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는 사회적·문화적 토대를 구축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환자의 최선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하여 호스피스 이용의 기반 조성에 필요한 시책을 우선적으로 마련하여야 한다.

제6조(호스피스의 날 지정) ① 삶과 죽음의 의미와 가치를 널리 알리고 범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며 호스피스를 적극적으로 이용하고 연명의료에 관한 환자의 의사를 존중하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매년 10월 둘째 주 토요일을 "호스피스의 날"로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호스피스의 날의 취지에 부합하는 행사와 교육·홍보를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1조(호스피스사업)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호스피스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1. 말기환자 등의 적정한 통증관리 등 증상 조절을 위한 지침 개발 및 보급
2. 입원형, 자문형, 가정형 호스피스의 설치 및 운영, 그 밖에 다양한 호스피스 유형의 정책개발 및 보급
3. 호스피스의 발전을 위한 연구·개발 사업
4. 제25조에 따른 호스피스전문기관의 육성 및 호스피스 전문 인력의 양성
5. 말기환자등과 그 가족을 위한 호스피스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6. 호스피스 이용 환자의 경제적 부담능력 등을 고려한 의료비 지원사업
7. 말기환자, 호스피스의 현황과 관리실태에 관한 자료를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수집·분석하여 통계를 산출하기 위한 등록·관리·조사 사업(이하 "등록 통계사업"이라 한다)
8. 호스피스에 관한 홍보
9.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24조(권역별호스피스센터의 지정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종합병원을 권역별호스피스센터(이하 "권역별센터"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공립 의료기관을 우선하여 지정한다.

1. 말기환자의 현황 및 진단·치료·관리 등에 관한 연구
2. 해당 권역의 호스피스사업의 지원
3. 해당 권역의 호스피스전문기관들에 관한 의료 지원 및 평가
4. 호스피스대상환자의 호스피스 제공
5. 해당 권역의 호스피스사업에 관련된 교육·훈련 및 지원 업무
6. 해당 권역의 호스피스에 관한 홍보
7. 말기환자 등록통계자료의 수집·분석 및 제공
8. 그 밖에 말기환자 관리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권역별센터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하지 아니하거나 잘못 수행한 경우에는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권역별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제1항에 따른 지정 기준에 미달한 경우
2.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하지 아니하거나 잘못 수행한 경우
3. 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경우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권역별센터 지정 및 지정취소의 기준·방법·절차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25조(호스피스전문기관의 지정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호스피스대상환자를 대상으로 호스피스전문기관을 설치·운영하려는 의료기관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인력·장비 등의 기준을 충족하는 의료기관을 입원형, 자문형, 가정형으로 구분하여 호스피스전문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으려는 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호스피스전문기관(이하 "호스피스전문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제29조에 따른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호스피스사업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차등 지원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호스피스전문기관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연 구 보 고

연구 번호	205
----------	-----

2020년 11월 06일
조례입법정책연구회

1. 제안이유

- 인권위원회의 자치법규 개선 권고 사항을 조례에 반영함으로써 주민의 인권을 증진시키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기본계획 수립시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를 추가 함.
(안 제4조제3항).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해당 없음.
- 나. 예산조치 : 해당 없음
- 다.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첨부)

용진군 범죄예방 디자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진군 범죄예방 디자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을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서면, 인터넷, 공청회 등으로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여야한다.”

제5조제2항을 “제1항에 따른 기준은 군보 또는 군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로 각각 개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p>제4조(기본계획 수립·시행 등)</p> <p>①생략</p> <p>1 ~ 4(생략)</p> <p>②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 color: red;"><u><신설></u></p>	<p>제4조(기본계획 수립·시행 등)</p> <p>①(현행과 같음)</p> <p>1 ~ 4(현행과 같음)</p> <p>②(현행과 같음)</p> <p style="color: red;">③ <u>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서면, 인터넷, 공청회 등으로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u></p>
<p>제5조(범죄예방 디자인에 대한 기준)</p> <p>①생략</p> <p>②제1항에 따른 기준은 군보 또는 군 인터넷 홈페이지에 <u>공고 할 수 있다.</u></p>	<p>제5조(범죄예방 디자인에 대한 기준)</p> <p>①(현행과 같음)</p> <p style="color: red;">② - - - - - - - - - - - - <u>하여야 한다.</u></p>

용진군 범죄예방 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물 및 생활공간에 범죄예방 디자인을 적용하여 주민들이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범죄예방 디자인”이란 용진주민(이하 “주민”이라 한다)의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를 사전에 차단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하여 건축물 및 생활공간을 범죄에 방어적인 구조로 변경 또는 개선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범죄예방 디자인의 기본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연적 감시가 가능하도록 건축물 및 생활공간을 배치하고, 조경 또는 조명 등을 통하여 부족한 부분을 보완한다.
2. 건축물 및 생활공간의 출입구, 울타리, 조경 및 조명 등을 적절히 배치한다.
3. 공간을 지역주민이 자유롭게 사용하거나 점유할 수 있게 하는 등 영역성을 강화한다.
4. 지역주민의 교류 증대를 통한 활동성 강화를 위하여 복지시설, 공원, 휴게시설, 상가 등을 유치 또는 배치한다.
5. 건축물 및 생활공간의 지속적인 유지·관리를 통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용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범죄로부터 안전한 환경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용진군 범죄예방 디자인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할 수 있다. 다만, 여건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본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1. 기본계획의 목표와 방향
2. 제7조에 따른 범죄예방 디자인 추진사업에 관한 사항
3. 범죄예방 디자인 추진을 위한 자원 조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범죄예방 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범죄예방 디자인의 현황 및 추진사업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신설안>③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서면, 인터넷, 공청회 등으로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제5조(범죄예방 디자인에 대한 기준) ① 군수는 범죄예방 디자인을 적용하기 위한 방안을 구체화하기 위하여 범죄예방 디자인에 대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준은 군보 또는 군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할 수 있다.

(개정안)② 제1항에 따른 기준은 군보 또는 군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6조(범죄예방 디자인 추진사업) 군수는 범죄예방 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기본계획에 따른 연차별 개선사업
2. 각종 공공시설 설치 및 환경개선사업과 병행한 안전시범마을 조성사업
3.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지식기반 구축 및 활용을 위한 연구사업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범죄예방 디자인 위원회의 설치) ① 군수는 범죄예방 디자인 추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용진군 범죄예방 디자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2. 제6조에 따른 범죄예방 디자인에 대한 기준의 수립·변경 및 적용에 관한 사항
3. 범죄예방 디자인 추진을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사업 추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회가 심의할 사항에 대해서는 「용진군 건축 조례」에 따른 용진군 건축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 개최 시 범죄예방 및 방범진단 분야에 경험이 풍부한 경찰공무원을 참석하게 할 수 있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범죄예방 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교육청, 인천중부경찰서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9조(교육 및 홍보) ① 군수는 공공기관, 군이 출자·출연하거나 지방보조금을 교부하는 기관·단체·법인 등에 범죄예방 디자인 추진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범죄예방 디자인 추진사업을 위하여 우수사례 등을 군보 또는 군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제10조(포상) 군수는 범죄예방 디자인 추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기관·단체 또는 개인에게 「용진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연 구 보 고

연 구 번 호	206
------------	-----

2020. 11. 06.
조례입법정책연구회

1. 연구경위

- 2020. 11. 06. 조례입법정책연구회 연구(2020. 11. 06. 회부)

2. 연구이유

- 「지방자치법」 제43조 및 제71조 등의 규정에 의하여 용진군의회의 내부규율과 회의진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장하여 의회의 민주적이고 능률적인 운영을 도모

3. 주요내용

- 의회 회의규칙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의회 회의의 기본적 질서와 효율 제고(안 제1조 ~ 안 제88조)

4. 연구의견

- 용진군의회 기본조례를 제정하여 보다 명확한 의회의 기본 대원칙과 활동 등을 구체화함에 따라 이에 수반되는 의회 회의규칙을 연동하여 더욱 보완하고 의회 기능을 강화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의회 회의규칙>(제1조~제88조)

현 행	개 정 안
제1장 총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생략>	제1조(목적) (현행과 같음)
제2조(적용범위) <생략>	제2조(적용범위) <삭제>
제3조(등록) <생략>	제3조(등록) <삭제>
제4조(의석배정) <생략>	제4조(의석배정) <삭제>
제5조(최초집회) <생략>	제5조(최초집회) <삭제>
제6조(개회식) <생략>	제6조(개회식) <삭제>
제7조(선서) <생략>	제7조(선서) <삭제>
제10조(의장·부의장 선거) <생략>	제10조(의장·부의장 선거) <삭제>
제11조(의장·부의장 임기) <생략>	제11조(의장·부의장 임기) <삭제>
제12조(임시의장의 선거) <생략>	제12조(임시의장의 선거) <삭제>
제13조(의장·부의장 사임) <생략>	제13조(의장·부의장 사임) <삭제>
<u>신 설</u>	제16조의1(산회)
제6장 군수 또는 관계공무원의 출석답변	제6장 군수 또는 관계공무원의 출석답변
제68조(군수 등의 출석요구) <생략>	제68조(군수 등의 출석요구) <삭제>
제68조2(군정에 대한 질문) <생략>	제68조2(군정에 대한 질문) <삭제>
제69조(군수에 대한 서면질문) <생략>	제69조(군수에 대한 서면질문) <삭제>
제70조(군수 등의 발언) <생략>	제70조(군수 등의 발언) <생략>
제8장 질서	제8장 질서
제75조(경호) <생략>	제75조(경호) <삭제>
제76조(회의의 질서유지) <생략>	제76조(회의의 질서유지) <삭제>
제77조(회의장 출입의 제한) <생략>	제77조(회의장 출입의 제한) <삭제>
제78조(방청의 허가) <생략>	제78조(방청의 허가) <삭제>
제79조(방청석의 구분 및 방청권의 종별) <생략>	제79조(방청석의 구분 및 방청권의 종별) <삭제>
제80조(방청권의 교부 및 기재) <생략>	제80조(방청권의 교부 및 기재) <삭제>

제81조(방청의 제한) <생략> 제82조(방청인의 준수사항) <생략> 제83조(녹음·녹화 등) <생략>	제81조(방청의 제한) <삭제> 제82조(방청인의 준수사항) <삭제> 제83조(녹음·녹화 등) <삭제>
---	---

웅진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제 1 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43조 및 제71조에 따라 웅진군의회의 민주적·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그 회의운영과 내부규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삭제

(적용범위) 웅진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회의운영과 내부규율 등에 관해서는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이 규칙에 따른다.

제3조 삭제

(등록) 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은 그 임기 초에 당선증서를 의회 사무과장(이하 “사무과장”이라 한다)에게 제시하고 관계서류와 함께 등록해야 한다.

제4조 삭제

(의석배정) 의회 본회의장(이하 “본회의장”이라 한다)에 의원의 의석은 웅진군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일정한 기준에 따라 이를 배정 한다. 다만, 의원 총선거(이하 “총선거”라 한다)후 의장이 선출되기 전의 의석은 의회사무과장이 지역선거구 및 비례대표 순서에 따라 임시로 배정한다.

제5조 삭제

(최초집회) ① 총선거 후 의회의 최초집회는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없으면 의원임기 개시일에 소집하도록 하되, 그 날이 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에 소집하도록 한다. 이 경우 소집공고는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의회사무과장이 미리 공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공고는 정례회 및 다른 임시회의 집회공고와 달리 소집공고로 하며, 의회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한다.

제6조 삭제

(개회식) ① 의회는 집회일에 개회식을 개최한다. 다만, 최초집회 및 제11조에 따른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만료 후 처음 임시회의 집회일에는 그 선거 후 개최하며, 최초집회의 개회식은 개원식으로 같음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개회식은 정례회와 매년 처음 집회되는 임시회를 제외하고, 그 밖의 임시회에서는 생략할 수 있다.

제7조(선서) 삭제

① 의원은 제6조에 따른 개원식에서 다음의 선서를 한다. “나는 법령을 준수하고 국민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 및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주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② 의원 보궐선거 재선거 또는 비례대표직의 승계에 따라 해당 지위를 취득한 의원은 그 후 처음 출석하는 의회 본회의에서 선서한다.

제8조(개폐선포) 의회의 개회와 폐회는 의장이 선포한다. 이 경우 폐회는 임시회 및 정례회 중 마지막 본회의의 산회선포로 같음한다.

제9조(청가 및 결석) ① 의원은 부득이한 사유로 의회에 출석하지 못할 경우 그 사유와 기간을 기재한 청가서를 미리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체포 또는 구금된 때에는 미리 제출한 관계 수사기관 등의 영장사본을 청가서로 본다.

② 의원의 청가는 5일 이내의 것은 의장이 허가하고 5일을 초과하는 것은 의회에서 이를 허가한다.

③ 의원이 청가의 기간이 경과되어도 의회에 출석할 수 없을 때에는 다시 청가서를 제출해야 하고 청가의 기간내에 의회에 출석한 때에는 그날 이후의 청가는 그 효력을 상실한다.

④ 의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의회에 출석하지 못한 때에는 그 사유와 기간을 기재한 결석계를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⑤ 의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본회의 또는 특별위원회에 계속하여 2일 이상 결석하였을 때에는 의장 또는 위원장은 해당의원에게 출석을 요구 하여야 한다.

⑥ 제5항의 출석요구는 서면으로 하되, 긴급할 경우에는 구두로 할 수 있다.

제 2 장 의장과 부의장

제10조 삭제

(의장·부의장 선거) ① 의장과 부의장은 의회에서 무기명투표로 선거하되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② 제1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 투표를 하고 2차 투표에도 제1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최고득표자가 1인이면 최고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최고 득표자가 2인이상이면 최고득표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함으로서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③ 제2항의 결선투표결과 득표수가 같을 경우에는 그 중 최다선 의원을, 최다선 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를 당선자로 결정한다.

④ 의장과 부의장을 동시에 선거할 경우에는 의장의 선거가 끝난 후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방법으로 부의장을 선거한다.

제11조 삭제

(의장·부의장의 임기) ①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의장·부의장의 임기는 의원 임기가 시작된 날로부터 2년으로 하고, 후반기 의장·부의장의 임기는 전반기 의장·부의장의 임기만료일 다음날부터 2년으로 한다.

② 보궐선거에 의하여 당선된 의장 또는 부의장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12조 삭제

(임시의장의 선거)법 제52조에 따른 임시의장의 선거는 제10조에 따른다.

-

제13조 삭제

(의장·부의장의 사임) ① 의장과 부의장은 의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② 사임에 대한 동의 여부는 토론을 아니하고 표결한다.

제 3 장 회의

제1절 회의의 개폐

제14조(회기) ① 의회의 회기는 의결로 이를 정하되 의결로 연장할 수 있다.

② 의회의 회기는 집회 후 즉시 이를 정하여야 한다.

③ 회기는 집회한 날로부터 기산한다.

④ 회의에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을 때에는 회기 중에도 의결로써 폐회할 수 있다.

제15조(개의 시간) 본회의는 본회의 의결 또는 의장이 그 개의 시간을 정한다. 이를 변경할 때도 또한 같다.

제16조(회의에 관한 선포) ① 본회의의 개의·정회·산회 및 유회는 의장이 선포한다.

② 의장은 제15조에 따른 개의 시간으로부터 1시간이 경과할 때까지 법 제63조제1항의 의사정족수에 미치지 달하지 못한 때에는 유회를 선포할 수 있다.

③ 의장이 개의를 선포하기 전이나 정회·산회 및 유회를 선포한 후에는 의사에 관한 발언을 할 수 없다.

<신설안> 16조의1(산회) ① 제16조제1항의 산회는 그날 본회의의 의사일정을 마쳤거나 의장이 더 이상 회의를 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할 경우 선포한다.

② 본회의 산회를 선포한 때에는 다시 개의할 수 없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의장은 부의장과 합의로 당일 다시 개회할 수 있다.

제17조(휴회) ① 의회는 의결로 기간을 정하여 휴회할 수 있다.

② 휴회 중이라도 용진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의 요구가 있거나 의장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회의를 재개한다.

제2절 의사일정

제18조(의사일정의 작성) ① 의장은 개의일시·부의안건과 그 순서를 기재한 의사일정을 작성하여 미리 의원에게 배부한다. 다만, 제17조제2항에 따라 재개할 때는 그렇지 않다.

② 의장은 특히 긴급을 필요로 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만을 의원에게 통지하고 개의할 수 있다.

제19조(의사일정의 변경) 재적의원 5분의 1이상의 연서에 의한 동의로 본회의의 의결이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의장은 의사일정의 순서를 변경하거나 특정 안건을 의사일정에 추가 또는 삭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원의 동의에는 이 유서를 첨부해야 하며 그 동의에 대하여는 토론을 아니하고 표결한다.

제20조(의사일정의 미료안건) 의장은 의사일정에 올린 안건에 대하여 회의를 열지 못하거나 회의를 마치지 못한 때에는 다시 그 일정을 정한다.

제3절 의안 및 동의

제21조(의안의 제출·발의) ① 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군수나 위원회 또는 의원이 제출하거나 발의한다. 다만, 의원은 재적의원 5분의 1이상의 연서로 발의하며 위원회의 의안제출은 그 소관에 속하는 사항에 한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의원이 조례안을 발의하는 때에는 발의의원과 찬성위원을 구분하되, 해당 조례안의 제명의 부제로 발의의원의 성명을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발의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대표발의의원 1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③ 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회기시작 7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2조(의안의 회부) ① 의장은 의안이 발의 또는 제출된 때에는 이를 인쇄하여 의원에게 배부하고 본회의에 보고한 후 본회의에서 심사·의결함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의원의 동의가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건에 대하여는 본회의의 의결로 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구성하여 심사토록 한다.

② 의장은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관련이 있는 다른 안건을 그 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③ 위원회에서 제출한 의안은 그 위원회에 회부하지 아니한다. 다만, 의장은 꼭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를 다른 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 ④ 제1항과 제2항 및 제3항의 경우 의장은 심사기간을 정할 수 있으며 위원회가 이 유없이 그 기간내에 심사를 마치지 않은 아니한 때에는 의장은 중간보고를 들은 후 다른 위원회에 회부하거나 바로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
- ⑤ 본회의는 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받은 후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의결로 다시 그 안건을 같은 위원회에 재회부하거나 다른 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 ⑥ 의장은 의원이 발의한 의안 중 건의안, 결의안, 성명서안 등 법령 또는 조례 등에서 규정한 지방의회의 의무적 의결사항이 아닌 의안에 대해서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본회의에 바로 부의할 수 있다.

제22조의2(조례안 예고) 의장은 의원발의 조례안이 발의 또는 제출된 때에는 법 제 6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거 5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취지·주요내용·전문을 공보나 의회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예고할 수 있다. 다만 긴급할 때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제23조(동의의 의제성립) 이 규칙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동의는 동의 자외 1명 이상의 찬성으로 의제가 된다.

- 제24조(수정동의) ① 의안에 대한 수정동의를 그 안을 갖추고 이유를 붙여 재적의원 4분의 1이상의 찬성자가 연서하여 미리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②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수정안은 찬성 없이 의제가 된다.
 - ③ 위원회는 소관사항 외의 안건에 대하여는 수정안을 제출할 수 없다.
 - ④ 의안에 대한 의원발의 대안은 위원회에서 그 원안을 심사하는 동안(토론종결 전 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제출해야 하며 의장은 이를 그 위원회에 회부한다.

- 제25조(의안·동의의 철회) ① 의원이 발의한 의안을 철회하고자 할 때에는 발의자 전원, 동의를 철회하고자 할 때는 때에는 동의한 자가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본회의에서 의제가 된 후에는 본회의에서 동의를, 위원회에서 의제가 된 후에는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 ②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서 의제가 된 군수 제출의 의안을 수정 또는 철회하고자 할 때에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26조(변안) 변안동의를 본회의에서는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 그 의안을 발의할 때 의 찬성자 3분의 2이상의 동의로, 위원회에 있어서는 위원의 동의로 발의한다. 그러나 본회의에 있어서는 안건이 군수에게 이송된 후에는 변안할 수 없으며, 위원회에 있어서는 본회의의 의제가 된 후에는 변안할 수 없다.

제27조(안건심의) ① 본회의는 안건을 심의함에 있어서 제안자의 취지·설명을 듣고 질의·토론을 거쳐 표결한다. 다만,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에 대하여는 위원장

의 심사보고를 듣고 질의·토론 또는 그중의 하나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제안자가 군수일 경우 취지·설명의 충실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대리하여 설명하게 할 수 있다.

③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2건 이상의 안건을 일괄해서 의제로 할 수 있다.

제28조(의안의 정리) 본회의는 의안의 의결이 있는 후 서로 저촉되는 조항·문구·숫자·그 밖의 정리를 필요로 할 때에는 이를 의장 또는 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제29조(의안의 이송) 의회에서 의결된 의안은 의장이 이를 군수에게 이송한다. 다만, 제22조제6항에 따라 의결된 건의안, 결의안 및 성명안은 해당 기관에 바로 이송할 수 있다.

제4절 발언

제30조(발언의 허가) ① 의원이 발언하려고 할 때에는 미리 의장에게 통지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발언통지를 하지 아니한 의원은 통지를 한 의원의 발언이 끝난 다음 의장의 허가를 받아 발언할 수 있다.

③ 의사진행에 대한 발언은 발언요지를 의장에게 미리 통지해야 하여야 하며, 의장은 의제에 직접 관계가 있거나 긴급히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은 즉시 허가하고 그 외의 것은 의장이 그 허가의 시기를 정한다.

제31조(발언의 장소) ① 발언은 등단하여 하되 극히 간단한 사항이나 토론 또는 의장이 허가한 때에는 의석에서 발언할 수 있다.

② 의장은 필요한 때에는 의석에서 발언하는 의원을 등단하도록 할 수 있다.

제32조(발언의 계속) 발언은 그 도중에 다른 의원의 발언에 의하여 정지되지 아니하며 산회 또는 회의의 중지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때에는 다시 그 의사가 개시되면 의장은 먼저 그 발언을 계속하게 한다.

제33조(의제 외 발언의 금지) ① 모든 발언은 의제 외에 미치거나 허가받은 발언의 성질에 어긋나서는 아니 된다.

② 의장은 의원의 발언이 제1항에 위반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의원에 대하여 주의를 주거나 발언을 금지시킬 수 있다.

제34조(발언회수의 제한) 의원은 같은 의제에 대하여 2회에 한정하여 발언할 수 있다. 다만,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거나 위원장·발의자 또는 동의자가 그 취지를 설명할 때와 의장이 허가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35조(발언시간의 제한) ① 위원의 발언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질의·보충발언·의사진행발언 및 신상발언 시간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의원이 시간제한으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는 의장이 인정하는 범위 안에서 이를 회의록에 게재할 수 있다.

제35조의2(5분 자유발언) ① 의장은 의원에게 의회가 심의 중인 의안과 청원, 기타 중요 관심 사안에 대한 의견을 충분히 발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의원에게 5분 이내의 발언(이하 "5분 자유발언"이라 한다)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매회기마다 5분 자유발언 시간의 총계는 본회의 개의 후 30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그 발언의 요지를 기재하여 발언하고자 하는 본회의 개의일 전날 18시까지 의장에게 서면으로 신청해야 하며, 발언순서는 신청순서에 따른다.

③ 5분 자유발언은 발언자가 시책 등 관심사안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 한정하고 별도의 의견을 묻거나 답변을 요구할 수 없으며, 의회 및 의원의 품위를 손상시키거나 다른 사람의 신상과 관련된 발언의 경우에는 의장이 이를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

제36조(보충보고) 의장은 위원장 또는 위원장이 지명한 소수의견자가 위원회의 보고를 보충하기 위하여 발언하려고 할 때에는 다른 발언에 우선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제37조(토론의 통지) ① 의사일정에 올린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고자 하는 의원은 미리 반대 또는 찬성의 뜻을 의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제1항의 통지를 받은 순서를 고려하여 가급적 반대자와 찬성자를 교대로 발언하게 하되 반대자에게 먼저 발언하게 한다.

제38조(의장의 토론참가) ① 의장이 토론에 참가할 때에는 의장석에서 물러나야 하며, 그 안건에 대한 표결이 끝날 때까지 의장석에 돌아갈 수 없다.

② 제1항에 의해 의장이 의장석에서 물러날 때에는 부의장이 의장을 대리한다.

제39조(질의 또는 토론의 종결) ① 질의 또는 토론이 끝났을 때에는 의장은 그 종결을 선포한다.

② 의원 2인 이상의 발언이 있는 후에는 의회의 의결로 의장은 질의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할 수 있다. 다만, 질의나 토론에 참가한 의원은 그 종결을 동의할 수 없다.

③ 제2항의 동의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표결한다.

제5절 표결

제40조(표결의 선포) ① 표결할 때에는 의장이 표결한 안건의 제목을 선포해야 한다.

② 의장이 표결을 선포한 때에는 누구든지 그 안건에 대하여 발언할 수 없다.

제41조(표결의 참가) 표결할 때에는 회의장에 있지 아니한 의원은 표결에 참가할 수 없다. 다만, 제43조에 따라 투표로 표결할 때에는 투표함이 폐쇄될 때까지 표결에 참가할 수 있다.

제42조(의사변경의 금지) 의원은 표결에 있어서 표시한 의사를 변경할 수 없다.

제43조(표결방법) ① 표결할 때에는 의장이 의원으로 하여금 기립 또는 거수하게 하여 가부를 결정한다.

② 의장의 제의 또는 의원의 동의로 본회의의 의결이 있을 때에는 기명 또는 무기명 투표로 표결한다.

③ 의장은 안건에 대한 이의 유무를 물어서 이의가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가결되었음을 선포할 수 있다. 그러나 이의가 있을 때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방법으로 표결해야 한다.

④ 의회에서 실시하는 각종 선거는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무기명 투표로 한다.

제44조(투표절차) ① 투표할 때에는 각 의원은 먼저 명패를 명패함에 넣은 다음에 투표용지를 투표함에 투입한다.

② 투표할 때에는 의장은 의원중에서 2명의 감표위원을 지명하고 그 위원의 참여하에 투·개표상황을 점검 계산하게 한다.

③ 투표의 수가 명패의 수보다 많을 때에는 재투표를 한다. 다만, 투표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감표위원은 다른 위원 모두의 투표가 끝난 후에 투표한다.

제45조(수정안의 표결순서) ① 동일의제에 대하여 여러 수 개의 수정안이 제출된 때에는 의장은 다음 각 호에 따라 표결의 순서를 정한다.

1. 최후로 제출된 수정안부터 먼저 표결한다.

2. 의원의 수정안은 위원회의 수정안보다 먼저 표결한다.

3. 의원의 수정안이 여러 수 개 있을 때에는 원안과 차이가 많은 것부터 먼저 표결한다.

② 수정안이 전부 부결된 때에는 원안을 표결한다.

제46조(표결결과 선포) 표결이 끝났을 때에는 의장은 그 결과를 선포한다.

제6절 회의록

제47조(회의록의 작성) ① 의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다음 사항을 기재한다.

1. 개회·폐회에 관한 사항
 2. 개의·회의중지·산회의 일시
 3. 의사일정
 4. 출석의원의 성명 및 수
 5. 출석공무원의 직과 성명
 6. 의원의 이동과 의석의 배정·변동
 7. 제반 보고사항
 8. 의안의 발의·제출·회부·환부·이송과 철회에 관한 사항
 9. 부의안건과 그 내용
 10. 의사
 11. 표결 및 기명 투표의 투표자 성명
 12. 서면질문과 답변서
 13. 의원의 발언 보충서
 14. 그 밖에 본회의의 의결 또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발언자의 발언에 관한 기록은 발언내용 전부를 그대로 기록한다.

제48조(회의록의 서명과 보존) ① 회의록에는 의장, 의장을 대리한 부의장, 임시의장과 의회에서 회기마다 선출된 2명 이상의 의원 및 의회사무과장이 서명한다. 다만, 선출된 의원은 그 회기의 회의록에만 서명한다.

② 회의록은 의회에 보존하고 보존연한은 영구로 한다.

제49조(자구의 정정과 이의의 결정) ① 발언한 의원과 공무원, 기타 발언 자는 회의록이 배부된 날의 다음날 오후 5시까지 그 자구의 정정을 의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그 발언의 취지를 변경할 수는 없다.

② 의원이 회의록에 기재한 사항과 회의록의 정정에 관하여 이의를 신청한 때에는 토론을 아니하고 본회의의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제50조(회의록의 배부 및 공개) ① 회의록은 의원에게 배부하고 일반에게 공개한다. 그러나 의장이 비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거나 사회의 안녕,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부분은 발언자와 협의하여 이를 배부하지 않거나 공개되는 회의록에 게재하지 않을 수 있다.

② 제1항의 단서에 따라 게재하지 않은 회의록 부분을 의원이 열람·복사 등을 신청한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의장은 이를 허가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허가 받은 의원은 다른 사람에게 이를 열람하게 하거나 전재·복사하게 해서는 안 된다.

④ 공개하지 않은 회의의 내용은 공포되어서는 안 된다. 다만, 본회의의 의결 또는

의장의 결정으로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소멸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배부하거나 공개되는 회의록에 게재할 수 있다.

⑤ 공표할 수 있는 회의록은 일반에게 유상으로 배포할 수 있다.

제 4 장 위원회

제51조(의사일정과 개최일시) 위원회의 의사일정과 개최일시는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하여 정한다.

제52조(개회) 위원회는 법 제61조에 따라 개최한다. 다만, 본회의 개의시간 중에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장과 협의해야 한다.

제53조(동의) 위원회에서 동의는 동의자 외 1명 이상의 찬성으로 의제가 된다.

제53조의2(제안) ① 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조례안과 그 밖의 의안을 제안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의안은 위원장이 제안자가 된다.

제54조(위원회의 심사) ① 위원회에서 안건을 심사할 경우에는 먼저 제안자의 취지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토론·축조심사를 거쳐 표결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로 창조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해당 안건이 위원회에 상정되기 전에 소속위원에게 배부되어야 한다.

③ 위원회는 의원발의 또는 위원회 제안 심의안건 중 예산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경우와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조례안에 대하여는 군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제안설명과 제3항에 따른 의견을 충실히 설명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에게 이를 대리하게 할 수 있다.

⑤ 주민청구조례안을 심사할 경우에는 법 제15조의2제2항에 따라 청구인의 대표자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그 청구취지를 들을 수 있다.

제55조(위원의 발언) ① 위원은 위원회에서 같은 의제에 대하여 회수 및 시간 등에 제한 없이 발언할 수 있다. 다만, 그 위원회에서 따로 발언의 방법을 의결할 때에는 그렇지 않다.

② 위원은 위원회에서 질의를 1문 1답 방식으로 할 수 있다.

제56조(위원 아닌 의원의 발언 청취) ① 위원회는 안건에 관하여 해당 위원회의 위원이 아닌 의원의 발언을 들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발언을 들을 때에는 사전에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57조(위원회의 의사·의결정족수) ① 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찬성과 반대가 같으면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58조(공청회) ① 위원회는 중요하거나 전문지식이 필요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공청회를 열고 이해관계자 또는 학식·경험이 있는 사람 등(이하 “진술인”이라 한다)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위원회에서 공청회를 열고자 할 때에는 안전·일시·장소·진술인·비용과 그 밖의 참고사항을 기재한 문서로 의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진술인의 선정과 발언시간은 위원회에서 정하되 진술인의 발언은 그 의견을 듣고자 하는 안건의 범위를 넘어서는 안 된다.
④ 위원회가 주관하는 공청회는 그 위원회의 회의로 한다.

제59조(심사보고서 제출) ① 위원회가 안전의 심사를 마친 때에는 심사경과와 결과,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서면으로 의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고서에는 소수의견의 요지를 기재해야 한다.
③ 의장은 보고서가 제출된 때에는 본회의에서 의제가 되기 전에 인쇄하여 의원에게 배부한다. 다만, 긴급할 때에는 이를 생략할 수도 있다.

제60조(위원장의 보고) ① 위원장은 소관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제가 된 때에는 위원회의 심사경과와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한다.
② 위원장은 간사나 소속 다른 위원에게 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보충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이 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는 때에는 자기의 의견을 가할 수 없다.

제61조(위원회 회의록) ① 위원회는 위원회 회의록을 작성하고 다음 사항을 기재한다.

1. 개의·회의중지와 산회의 일시
2. 의사일정
3. 출석의원의 성명
4. 출석한 위원 아닌 의원의 성명
5. 출석한 공무원·진술인의 성명
6. 심사안전명
7. 의사
8. 표결수
9. 위원장의 보고
10. 위원회에서 종결되거나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결정된 안전명과 그 내용

11. 그 밖에 위원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에서 발언자의 발언에 관한 기록은 발언내용 전부를 그대로 기록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이 있거나 위원장이 부득이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이를 요약하여 기록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약한 기록이 발언자의 발언 취지를 벗어나거나 지나치게 요약되어서는 안 된다.

③ 위원회 회의록에는 위원장 또는 위원장을 대리한 간사가 서명한다.

제62조(비공개 회의록 등의 열람과 대출금지) 위원장은 의원으로부터 비공개 회의록 그 밖의 비밀 참고자료의 열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심사·감사 또는 조사에 지장이 없으면 이를 허용해야 한다. 다만, 의회 밖으로 대출하지 못한다.

제 5 장 예산안과 결산심사

제63조(예산안의 심의) 의회에 예산안이 제출된 때에는 군수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후 의장은 이를 심사기간을 정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위원회”라 한다)에 회부하고 그 심사가 끝난 후 본회의에 부의한다. 다만, 의원정수가 특히 적어 예결위원회의 설치 운영이 용이하지 않을 경우에는 예산을 본회의에서 바로 심의할 수 있다.

제64조(예산안의 수정동의) 예결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예산안의 수정동의를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의제가 된다.

제65조(예산안의 의결) ① 예산안의 심사보고가 있을 때에는 예산의 각 부문별로 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

② 예산 각 부문의 의사가 끝나면 총액에 대하여 의결한다.

제66조(예산안의 재심요구) 예결위원회에서 다시 심사할 필요가 있는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의회의 의결로 그 사항에 한하여 기간을 정해 예결위원회에 재심사를 요구할 수 있다.

제67조(결산의 심사) 의회에 결산이 제출된 때에는 의장은 지체없이 예결위원회에 회부하고 예결위원회의 심사가 끝난 후 그 결과를 보고받아 본회의에 부의한다. 다만, 의원정수가 특히 적어 예결위원회의 설치운영이 용이하지 않을 경우에는 결산을 바로 본회의에서 심사할 수 있다.

제67조의2(기금운용계획안 등 심사)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군수로부터 제출되는 기금운용계획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기금의 결산에 관하여는 제63조부터 제67조에 따른다. 이 경우 “예산안”과 “결산”은 각각 “기금운용계획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과 “기금의 결산”으로 본다.

제 6 장 군수 또는 관계공무원의 출석답변

제68조 삭제

(군수 등의 출석요구) ① 본회의는 그 의결로 군수 또는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의는 재적의원 5분의 1이상이 이유를 명시한 서면으로 해야 한다.

② 위원회는 그 의결로 의장을 경유하여 군수 또는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군수 또는 관계공무원은 출석·답변하여야 하며, 군수가 출석요구를 받은 경우 출석할 수 없는 사유가 있거나 답변의 충실을 위하여 관계공무원의 대리출석이 필요한 때에는 그 사유서를 의장에게 사전 제출한 후에 관계공무원에게 대리출석·답변하게 할 수 있다.

제68조의2 삭제

(군정에 관한 질문) ① 본회의는 회기 중 기간을 정하여 군정전반 또는 군정의 특정분야를 대상으로 집행기관에 대하여 질문(이하 "군정질문"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② 군정질문은 일문일답 또는 일괄질문·일괄답변 방식으로 하되, 이중 어느 하나의 방식을 선택하여야 하며, 질문순서는 일문일답 방식이 일괄질문·일괄답변 방식에 우선한다.

③ 일문일답의 경우 의원의 질문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40분을 초과할 수 없다.

④ 일괄질문·일괄답변의 경우 질문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의장은 의원의 질문과 집행부의 답변이 끝난 후 필요한 경우 10분 이내의 보충질문을 허가할 수 있다.

⑤ 질문을 하지 않은 의원의 보충질문은 질문을 한 의원의 양해를 구하여 의원당 1회 5분만 할 수 있다.

⑥ 질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미리 질문의 요지와 질문방식을 기재한 질문요지서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의장은 질문내용이 의원 간에 서로 중복되지 않도록 조율한 후 늦어도 군정질문 시간 48시간 전(이 경우 휴무·공휴일은 제외한다)까지 질문요지서가 군수에게 도달되도록 송부해야 한다.

제69조 삭제

(군수에 대한 서면질문) ① 군수에게 서면으로 질문하려고 할 때에는 질문서를 의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의장은 지체없이 이를 군수에게 이송한다.

② 군수는 질문서를 받는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답변해야 한다. 이 기간내에 답변하지 못할 때에는 그 이유와 답변할 수 있는 기한을 의장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답변에 보충질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서면으로 다시 질문할 수

있다.

제70조 삭제

(군수 등의 발언) 군수 또는 관계공무원이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발언하려고 할 때에는 미리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 7 장 사직과 자격심사

제71조(사직) ① 의원이 사직하고자 할 때에는 본인이 서명날인한 사직서를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사직의 허가여부는 토론없이 표결한다. 다만, 폐회 중에는 의장이 이를 허가할 수 있다.

③ 의원은 의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허가가 있기 전까지는 본인이 제출한 사직서를 철회할 수 있다.

제72조(청구서의 위원회 회부와 답변서 제출) ① 의장은 법 제79조에 따라 의원의 자격심사 청구가 있을 때에는 그 청구서를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 그 부분을 피심의원에게 송달하여 기일을 정하여 답변서를 제출하게 한다.

② 피심의원이 천재지변 또는 질병, 그 밖의 사고에 의하여 기일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못함을 증명한 때에는 의장은 다시 기일을 정하여 답변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73조(답변서의 위원회 심사 등) ① 의장이 제72조에 따라 답변서를 접수한 때에는 이를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

② 윤리특별위원회는 청구서와 답변서에 따라 심사한다. 다만, 기일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은 때에는 청구서만으로 심사를 할 수 있다.

③ 윤리특별위원회는 심사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한다. 이때 의장은 이를 본회의에 부의해야 한다.

④ 자격상실의 의결이 있을 때에는 의장은 그 결과를 청구의원과 피심의원에게 송부한다.

제74조(당사자의 심문과 발언) ① 윤리특별위원회는 필요한 때에는 의장을 경유하여 청구의원과 피심의원을 출석하게 하여 심문할 수 있다.

② 청구의원과 피심의원은 윤리특별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이에 출석·발언하게 할 수 있다.

③ 피심의원은 본회의에서 스스로 변명하거나 또는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변명하게 할 수 있다.

제 8 장 질서

제75조 삭제

- (경호) ① 의장은 의회의 경호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관할 경찰관서에 경찰관의 파견을 미리 요구할 수 있으며 의회의 경호가 긴급히 필요한 경우에는 의장은 사태가 해결될 때까지 경찰관의 파견을 즉시 요구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파견된 경찰관은 의장의 지휘를 받아 회의장 밖에서 경호한다.

제76조 삭제

(회의의 질서유지) 의원은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 안에서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이나 의회의 위신을 손상시키는 언동
2. 의사진행을 지연시키거나 방해할 목적으로 신문, 잡지, 간행물, 그 밖의 문서를 낭독하는 행위
3. 의장의 허가를 받지 않은 자료·문서 등의 인쇄물 배포 및 녹음·녹화 촬영행위
4. 음식물을 먹거나 담배를 피우는 행위
5. 회의와 관계없는 물품을 들고 들어가는 행위
6. 그 밖의 폭력의 행사 등 회의장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

제77조 삭제

(회의장 출입의 제안) 회의장 안에는 의원, 관계공무원, 그 밖의 의안심의에 필요한 사람과 의장이 허가한 사람 외에는 출입할 수 없다.

제78조 삭제

(방청의 허가) 의장은 방청권을 발행하여 방청을 허가한다.

제79조 삭제

- (방청석의 구분 및 방청권의 종별) ① 방청석은 일반석과 기자석으로 구분한다.
- ② 방청권의 종별은 일반방청권, 단체방청권, 장기방청권으로 한다.

제80조 삭제

- (방청권의 교부 및 기재) ① 방청권은 의장의 지휘를 받아 의회사무과장이 그 수를 정하여 이를 교부한다.
- ② 단체방청권은 교육기관, 그 밖에 단체의 신청에 따라 단체로 방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그 대표 또는 책임자에게 교부한다.
- ③ 장기방청권은 보도기관 종사자나 업무상 방청이 특히 필요한 관서의 직원에게 교부하여 장기방청권을 교부받은 사람은 그 회기동안 방청할 수 있다.
- ④ 방청인은 방청권에 주소·성명·직업 및 연령 등 소정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81조 삭제

(방청의 제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방청을 허가하지 않는다.

1. 흥기 또는 위험한 물품을 휴대한 사람
 2. 음주상태에 있는 사람
 3. 그 밖에 행동이 수상하다고 인정되거나 질서유지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사람
- ② 의장이 필요한 때에는 경찰관 또는 관계직원에게 방청인의 휴대품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 ③ 의장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방청인 수를 제한할 필요가 있거나 또는 방청석의 여유가 없을 때에는 방청권을 소지한 사람에게 제한할 수 있다.

제82조 삭제

(방청인의 준수사항) ① 방청인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다.

1. 회의장 안으로 진입하는 행위
 2. 모자·외투를 착용하는 행위
 3. 회의와 관계없는 물품을 휴대하거나 반입하는 행위
 4. 음식물을 먹거나 담배를 피우는 행위
 5. 신문, 잡지, 그 밖의 문서를 낭독하는 행위
 6. 의장의 허가 없는 녹음·녹화·촬영행위
 7. 회의장의 발언에 대하여 공공연하게 가부를 표하거나 박수를 치는 행위
 8. 그 밖에 소란 등 회의의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
- ② 의장은 방청인의 폭언이나 폭력행사 등으로 회의진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방청인 모두를 퇴장 시킬 수 있다.

제83조 삭제

(녹음·녹화 등) ① 회의를 공개하지 않기로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장 또는 위원장은 의회에 등록된 기자에 한하여 회의장 안(본회의장은 방청석에 한한다)에서의 녹음·녹화·촬영 및 중계방송을 허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녹음 등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매 회기 초에 허가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얻어야 한다. 다만, 위원회에 있어서는 허가를 얻고자 할 때마다 위원장에게 구두로 신청할 수 있다.

③ 사무직원의 기록보존 등의 업무와 관련된 회의장에서의 녹음·녹화·촬영은 절차상 제한 없이 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녹음 등을 하는 사람은 회의장 질서를 문란하게 하여서는 안 된다.

제84조(징계의 요구와 회부) ① 의장은 법 제86조에 해당하는 징계대상의원(이하 “징계대상자”라 한다)이 있을 때에는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고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

② 위원장은 소속 위원중에서 징계대상자가 있을 때에는 의장에게 이를 보고한다. 이 경우 의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본회의에 보고하고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

③ 의원이 징계대상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할 때에는 재적의원 5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징계사유를 기재한 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법 제83조에 따른 모욕을 당한 의원이 징계를 요구할 때에는 찬성위원을 필요로 하지 않으며 징계사유를 기재한 청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한다.

④ 제3항의 징계요구가 있을 때에는 의장은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고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

⑤ 제1항과 제2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의장은 징계대상행위가 지극히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본회의에 바로 부의할 수 있다.

제85조(징계의 요구 또는 회부의 시한) ① 제84조제1항과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징계회부는 의장이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 징계대상자가 있는 것을 알게 된 날,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징계요구가 있는 날로부터 폐회 또는 휴회기간을 제외한 3일 이내에 해야 한다. 같은 조 제5항의 본회의 부의 시한 또한 같다.

② 제84조제3항에 따른 징계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 징계대상자가 있는 것을 알게 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해야 한다. 다만, 폐회기간 중에 징계대상자가 있을 경우에는 다음 의회의 집회일로부터 3일 이내에 해야 한다.

제86조(의사의 비공개) 징계에 관한 회의는 공개하지 않는다.

제87조(심문 및 변명) ① 윤리특별위원회는 의장을 경유하여 징계대상자와 관계의원을 출석하게 하여 심문할 수 있다.

② 의원은 자기의 징계안에 관한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할 수 없으나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스스로 변명하거나 다른 의원에게 변명을 하도록 할 수 있다.

제88조(징계의 의결과 선포) ① 의장은 윤리특별위원회로부터 징계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지체없이 본회의에 부의하여 이를 의결해야 한다.

② 징계를 의결한 때에는 의장은 공개회의에서 이를 선포한다.

이 규칙은 최초 집회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용진군의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조례
제정조례안

연 구 보 고

연구 번호	207
----------	-----

제출연월일 : 2020.11.06.
조례입법정책연구회

1. 연구이유

○ 용진군의의회 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입법정책고문 및 법률고문을 두고 입법정책, 법률사안 등의 자문운영에 적정을 기하여 선진의회를 구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입법 및 법률고문은,

1. 의회 자치법규의 제·개정 등에 관한 입법사안의 자문
2. 제1호를 위한 상위법, 관련법규 해석 및 입법·정책의 자문
3. 의장으로부터 수입 받은 의회관련 쟁송사건의 소송수행
4. 의회운영 및 의안심사·처리, 기타 의회관련 입법정책, 법률사안의 자문

5. 기타 의장이 위임한 법률 사안 등을 처리함을 명시 (안 제2조)

○ 고문의 정원은 2명 이내로 함. (안 제3조)

○ 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함. (안 제6조)

용진군의회의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조례 제정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용진군의회의(이하 "의회"라 한다)에 입법정책고문 및 법률고문을 두고 입법정책, 법률사안 등의 자문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직무) ① 입법 및 법률고문(이하 "고문"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고 처리한다.

1. 의회 자치법규의 제·개정 등에 관한 입법사안의 자문
2. 제1호를 위한 상위법, 관련법규 해석 및 입법·정책의 자문
3. 용진군의회의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수임 받은 의회관련 쟁송사건의 소송수행
4. 의회운영 및 의안심사·처리, 기타 의회관련 입법정책, 법률사안의 자문
5. 기타 의장이 위임한 법률 사안

② 고문은 제1항 각 호의 직무를 정당한 이유 없이 기피하거나 소홀히 하여서는 안 된다.

③ 고문은 의회를 당사자로 하는 쟁송사건에 있어 상대방을 위하여 소송대리 또는 자문을 하여서는 안 된다.

제3조(정원) 고문의 정원은 2명 이내로 한다.

제4조(위촉) ① 고문은 교수, 변호사 및 입법·법률·지방자치분야에서 지식과 경륜을 갖춘 사람가운데 의회 사무과장의 추천을 받아 의장이 위촉한다.

② 고문은 용진군 법률 고문직을 겸할 수 없다.

③ 의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하는 고문에게는 본인의 승낙서를 받은 후 위촉장을 교부한다.

제5조(해촉) 의장은 고문의 임기 중이라도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 할 수 있다.

1.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2. 제2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의회에 불이익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
4. 고문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5. 자문에 응하는 실적이 부진하거나 불성실한 경우
6. 기타 해촉에 상당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6조(임기) 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재위촉할 수 있다.

제7조(회의) ① 의장은 입법정책, 법률 문제와 쟁송사건의 소송수행을 협의하기 위하여 고문이 참가하는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② 회의에 참석한 고문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회의수당을 지급 할 수 있다.

제8조(수당) ① 고문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용진군 고문변호사에게 지급하는 수당과 같은 금액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수당은 매월 말일에 지급한다. 다만, 그 지급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익일에 지급한다.

③ 고문이 의회에서 지정하는 연구과제에 대하여 용역 등을 수행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별도의 보상금을 지급 할 수 있다.

제9조(자문기록부 비치) 의장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자문을 의뢰한 사항에 대하여는 자문기록부를 의회사무과에 비치하고 월별로 정리하여야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2호 서식]

위 축 장

주 소 :

성 명 :

귀하를 「용진군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용진군의회의 입법(법률)고문으로 위촉합니다.

(위촉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월 일

용진군의회의장

[별지 제3호서식]

자문처리 실적부

의 퇴 사 항				처 리 결 과		
년월일	건명	의퇴인	의퇴내용	년월일	고문인	처리내용

용진군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연구보고

연구 번호	208
----------	-----

연구연월일 : 2020.12.09.
조례입법정책연구회

1. 연구이유

○ 「지방자치법」 제38조 제2항에 따라 용진군의회 의원의 의정 및 군정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다양한 정책개발연구 활동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의장은 의원연구단체의 등록 및 연구활동 등에 필요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의원연구단체 심의위원회를 둠.(안 제5조)
-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음. (안 제5조)
- 위원회의 위원장은 용진군의회 부의장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의장이 지명하거나 위촉함.
 - 1. 의원 2명 (안 제5조)
 - 2. 연구활동 심의에 전문성을 갖춘 외부인사 3명 (안 제5조)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시행령」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5조(의원연구단체심의위원회)</p> <p>① 생략</p> <p>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u>5명 이내로</u>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며,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p> <p>③ 생략</p> <p><u>1. 의원 2명이내</u></p> <p><u>2. 연구활동 심의에 전문성을 갖춘 외부인사 2명이내</u></p> <p>④ 생략</p>	<p>제5조(의원연구단체심의위원회)</p> <p>① 현행과 같음</p> <p>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u>5명으</u>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며,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p> <p>③ 현행과 같음</p> <p><u>1. 의원 2명</u></p> <p><u>2. 연구활동 심의에 전문성을 갖춘 외</u> <u>부인사 3명</u></p> <p>④ 현행과 같음</p>

웅진군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웅진군의회 의원연구단체의 연구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의원 입법 및 정책개발 활성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의원연구단체”란 웅진군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조례 또는 지역 현안 등에 대한 정책의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구성하고, 웅진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등록된 단체를 말한다.
2. “연구활동비”란 의원연구단체가 입법 및 정책의 연구·개발을 수행하기 위하여 공청회, 간담회, 현장방문 등에 소요되는 연구활동 경비를 말한다.
3. “정책연구용역비”란 입법 및 정책개발을 수행하기 위한 용역의 경비를 말한다.

제3조(의원연구단체의 구성) ① 의원연구단체는 2명 이상의 의원으로 구성하고, 의원연구단체마다 대표자(이하 “대표자”라 한다)를 둔다.

② 의원은 2개 이하의 의원연구단체에 가입할 수 있다.

제4조(연구활동 범위) 의원연구단체의 연구활동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입법 및 정책개발 관련 공청회, 간담회, 현장방문 등
2. 의원연구단체의 활동 분야에 관한 정책연구용역
3. 그 밖에 웅진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구활동

제5조(의원연구단체 심의위원회) ① 의장은 의원연구단체의 등록 및 연구 활동 등에 필요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용진군의회 의원연구단체 심의 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내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며,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안)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며,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용진군의회 부의장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의장이 지명하거나 위촉한다.

1. 의원 2명 이내

(개정안)1. 의원 2명

2. 연구활동 심의에 전문성을 갖춘 외부인사 2명 이내

(개정안)2. 연구활동 심의에 전문성을 갖춘 외부인사 3명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의원연구단체 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제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 한다.

1. 의원연구단체의 등록 및 취소에 관한 사항
2. 연구활동 계획 및 변경 승인에 관한 사항
3. 연구활동비 및 정책연구용역비 책정과 배분에 관한 사항
4. 정책연구용역 승인에 관한 사항
5.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승인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의원연구단체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7조(위원회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에서는 필요한 경우 대표자를 참석하게 하여 그 내용을 청취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위원이 안건과 관련한 의원연구단체에 가입한 경우에는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다만, 위원회의 동의를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8조(의원연구단체의 등록 등) ① 의원연구단체는 제5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의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 의원이 제1항에 따른 의원연구단체를 등록하려는 때에는 대표자가 별지 제1호서식의 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대표자는 의원연구단체에 소속된 의원이 변경된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지체없이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의원연구단체의 등록취소 등) ① 의장은 의원연구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위원회의 승인 없이 연구활동 계획을 변경한 경우
2.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3. 제3조제1항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등록을 취소한 경우 의장은 연구활동비 지급을 중지하고 지급한 비용을 회수할 수 있다.

제10조(연구활동비 지원) ① 의장은 의원연구단체의 연구활동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의정운영공통경비 예산의 범위에서 연구활동비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하나의 의원연구단체에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은 연 1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1. 연구활동에 따른 급식비

2. 연구활동에 수반되는 회의비, 강사료, 전문가 자문경비 등 필요경비
- ② 의원연구단체는 연구활동비를 승인받은 연구활동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제11조(의원정책개발비 지원) ① 의장은 의원연구단체가 정책연구용역을 발주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의원정책개발비를 지원할 수 있다.

- ② 의원정책개발비는 제5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의장이 정한다.
- ③ 의원연구단체가 제2항에 따른 입법 및 정책개발을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하려는 때에는 해당 의원연구단체의 대표자가 의장에게 연구용역의 계약 및 용역비 집행 등을 요청 하여야 한다.

제12조(공동참여) 의원연구단체는 외부의 연구기관·단체 등과 공동으로 학술연구용역에 참여할 수 있다.

제13조(연구활동계획의 제출 등) ① 연구활동비 및 정책연구용역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의원연구단체는 매년 3월 말까지 별지 제3호 서식의 연구활동계획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의회 의원선거가 있는 해에는 8월말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의원연구단체가 연구활동 주제 및 목적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5호 서식의 연구활동계획 변경신청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의장으로부터 제1항의 연구활동계획서 및 제2항의 연구활동계획 변경신청서의 심의를 의뢰받은 날부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20일 이내에 심의·의결하여야 한다.

④ 위원장은 심의결과를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의장에게 통보하고 의장은 이를 해당 의원연구단체에 알려야 한다.

제14조(전문가의 활용) ① 의원연구단체는 연구활동비의 범위에서 해당분야의 전문가(이하 "민간전문가"라 한다)를 활용할 수 있으며,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대표자가 위촉한다.

1. 해당 연구 분야의 박사학위 소지한 사람
 2. 해당 연구 분야의 기관 등에서 10년 이상의 경험이 있는 사람
 3. 제1호 및 제2호에 상응하는 지식과 경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
- ② 의원연구단체가 민간전문가를 활용하려는 때에는 필요 인원, 활용 기간 등 민간전문가 활용계획을 제13조제1항에 따른 연구활동계획서 또는 제13조제2항에 따른 연구활동계획 변경신청서 제출시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의원연구단체는 공청회, 간담회, 현장방문 등에 참여한 민간전문가에게 강사료와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연구활동비의 범위에서 「옹진군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준용하여 지급할 수 있다.

- 제15조(연구활동비 등 집행 및 관리)** ① 의장은 의원연구단체의 연구활동비를 연구활동계획 심사결과에 따라 지급하되, 연 2회 분할(연구활동계획 심의결과 통지 후, 연구활동 결과보고서의 심의 후)하여 지급할 수 있다.
- ② 의원연구단체의 연구활동비 집행은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을 따른다.
- ③ 의원연구단체는 정책연구용역 진행 상황에 대한 보고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정책연구용역비 5백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 ④ 의원연구단체는 소속 의원이 정책연구용역의 주제 선정 및 보고 시 적극적인 참여를 통하여 의견을 수렴하고 실효성 있는 연구활동 성과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 제16조(연구활동 보고서 등의 제출)** ① 연구활동비 및 의원정책개발비를 지원 받은 의원연구단체는 연구활동 종료 후 30일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의 연구활동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의회 의원선거가 있는 해에는 5월 말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연구활동 보고서 제출 시 지원받은 연구활동비 및 의원정책개발비 사용내역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연구활동 보고서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며, 연구결과는 「의원연구사례집」으로 발간할 수 있다.

제17조(의원연구단체 존속기한) 의원연구단체의 존속기한은 등록일부터 연구결과 종료시 또는 의원임기 만료일까지로 한다.

제18조(의원연구단체 등록부) 의장은 의원연구단체별 활동내용을 별지 제 7호서식의 의원연구단체 등록부에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19조(수당) 의장은 위원과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에 참석하였을 때에는 「옹진군 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용진군의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연 구 보 고

연 구 번 호	209
------------	-----

2020. 12. 09.
조례입법정책연구회

1. 연구경위

- 2020. 12. 09. 조례입법정책연구회 연구(2020. 12. 09. 회부)

2. 연구이유

- 「지방자치법」 제57조에 따라 설치된 「용진군의의회 윤리특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비함.
- 용진군의의회 윤리특별위원회의 구성원인 위원회 위원 정수 조정을 통하여 위원회 운영의 효율화를 도모하고 의회의 능률적인 운영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용진군의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구성 정수 조정.(안 제2조)

4. 연구의견

- 개정을 통하여 위원회 활동의 명확한 결정을 도모해야 할 것으로 사료 됨.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구성) 윤리특별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u>6인</u> 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2조(구성) 윤리특별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u>5인</u> 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용진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해 설치되는 윤리특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윤리특별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6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안) 제2조(구성) 윤리특별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3조(소위원회) 위원회는 윤리심사 및 징계·자격심사에 관한 사항을 분담·심사하기 위하여 윤리심사소위원회와 징계·자격심사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4조(위원회 개최의 통지) 위원장은 윤리심사 또는 징계·자격심사를 위하여 위원회를 개최할 때에는 그 개최일시와 장소 등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윤리심사 또는 징계·자격심사를 청구하거나 요구한 위원장 및 위원(이하 "심사요구의원"이라 한다.)

2. 윤리심사 또는 징계·자격심사대상자(이하 "심사 대상의원"이라 한다).

제5조(심문) 위원장은 위원회가 윤리심사대상자 또는 징계대상자와 관련의원을 출석하여 심문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개최일 3일전까지 출석요구서를 송달하여야 한다.

제6조(발언 및 변명) ① 심사요구의원 또는 심사대상의원이 발언하거나 변명하고자 할 때에는 그 요지를 기재한 신청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심사대상의원이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위원회에서 발언 또는 변명하고자 할 때에는 그 의원의 성명과 요지를 기재한 신청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간사와 협의하여 발언 또는 변명을 서면 또는 구두로 하게 할 것인지를 결정하여 이를 통지한다.

제7조(증빙서류 등의 제출) 심사대상의원 또는 심사요구의원은 위원회의 심사에 필요한 증빙서류·해명자료 등을 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제8조(통고) 위원회가 의결한 내용을 통보할 경우에는 서면으로 하되, 그 위반 사실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위원회는 당해 의원의 출석을 요구하여 구두로 통보할 수 있다.

제9조(제척과 회피) ① 위원은 윤리심사 또는 징계·자격심사에 관한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회는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의결로 당해 위원의 심사를 중지시킬 수 있다.

제10조(위원회에 두는 공무원) 위원회에 필요한 공무원을 두되, 의회사무기구 소속 공무원이 겸직 근무할 수 있도록 한다.

제11조(위임) 이 규칙에서 정한 이외의 위원회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용진군 고용상의 차별행위 금지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

연 구 보 고

연구 번호	210
----------	-----

연구연월일 : 2020.12.09.
조례입법정책연구회

1. 연구이유

본 조례는 용진군 등이 고용에 있어 성별, 연령, 신체조건 등을 이유로 하는 각종 차별행위를 금지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합리적인 고용 평등을 실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목적과 정의 및 적용범위 등에 관한 사항(안 제1조 ~ 제3조)
- 나. 군수 등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다. 차별행위 금지와 예외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제6조)
- 라. 불리한 처우 금지와 차별행위 신고 등에 관한 사항(안 제7조 ~ 제8조)
- 마. 실태조사와 업무협조 및 개선권고에 관한 사항(안 제9조 ~ 제11조)

3. 제정조례안 : 붙임

4. 관계법령 : 고용기본법

웅진군 고용상의 차별행위 금지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웅진군 등이 고용에 있어 성별, 연령, 신체조건 등을 이유로 하는 각종 차별행위를 금지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합리적인 고용 평등과 민주적 사회를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용"이란 모집, 채용, 교육, 배치, 승진, 임금, 임금 외의 금품 지급 및 복리후생, 자금의 융자, 정년, 퇴직, 해고 등과 관련된 모든 영역을 말한다.
2. “고용상의 차별행위”란 고용과 관련하여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 지역 및 국가, 용모, 혼인 여부, 임신·출산, 가족상황, 병력, 학력, 그 밖의 사유로 특정한 사람 또는 특정한 사람들이 속한 집단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말한다.
3. “기초심사자료”란 취업희망자의 응시원서,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등) ①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기관(이하 “적용대상기관”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1. 「웅진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하부행정기관
2. 「웅진군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출자·출연기관

② 적용대상기관은 고용과 관련하여 법령 또는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군수 등의 책무) ① 용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은 관계 법령과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고용상의 차별행위 금지 책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고용상의 차별행위를 해소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적용대상기관의 장에게 고용상의 차별행위를 금지하도록 권고하고, 만약 적용대상기관에서 고용상의 차별행위가 발생한 경우 그 행위의 시정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장애인, 고령자, 여성, 청년 등의 고용이 촉진될 수 있도록 적합한 업종의 개발과 보급을 위한 시책을 개발·시행하여야 한다.

⑤ 적용대상기관의 장은 군의 고용상의 차별행위 금지에 관한 정책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차별행위 금지 등) ① 적용대상기관의 장은 취업을 희망하는 자 또는 소속 근로자에게 합리적인 이유 없이 고용상의 차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균등한 고용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

② 적용대상기관의 장은 장애인, 고령자, 청년 등의 의무고용 비율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적용대상기관의 장은 취업희망자에게 그 직무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용모·키·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 출신 지역, 부모의 직업과 재산 상황 등을 기초심사자료에 기재하도록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차별행위의 예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차별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1. 직무의 성격에 비추어 특정 연령기준이 불가피하게 요구되는 경우
2. 근속기간의 차이를 고려하여 임금이나 임금 외의 금품과 복리후생에서 합리적인 차등을 두는 경우
3. 다른 법령에 따라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정년을 설정하는 경우
4. 다른 법령에 따라 특정 연령집단의 고용유지·촉진을 위한 지원조치를

하는 경우

제7조(불리한 처우 금지) 적용대상기관의 장은 소속 근로자가 고용상의 차별 행위에 대한 진정, 자료제출, 답변·증언, 소송, 신고 등을 하였다는 이유로 해고, 전보, 징계,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차별행위 신고 등) 고용상의 차별행위를 당한 군민 또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나 단체는 군에 그에 관하여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거나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9조(실태조사) 군수는 적용대상기관을 대상으로 고용상 차별행위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군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표할 수 있다.

제10조(업무협조) 군수는 고용상의 차별행위 금지에 관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개선권고) 군수는 제8조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적용대상기관의 장에게 차별행위의 시정 또는 제도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용진군 군민의 날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연 구 보 고

연 구 번 호	211
------------	-----

2020.12.09.
조례입법정책연구회

1. 연구경위

- 2020. 12. 09. 조례입법정책연구회 연구(2020. 12. 09. 회부)

2. 연구이유

- 「군민의 날 조례」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 「용진군 군민의 날」의 추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비함.

3. 주요내용

- 용진군 군민의 날을 정함으로써 향토 고유의 미풍양속을 계승하여 애향심과 자치의식을 고취시키고, 군민 모두가 이 날을 축하하고 기념하며 상호 간의 친목과 단합을 도모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 군수는 매년 군민의 날을 기념하고 용진군민으로서의 자긍심과 일체감을 조성하기 위하여 각종 행사를 추진할 수 있음.(안 제2조의 1)

1. 군민의 날 기념행사
2. 각 부문 군민상 시상
3. 기타 군민의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사

○ 군수는 행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음. (안 제2조의 2)

○ 제1항의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용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름.(안 제2조의 2)

4. 연구의견

○ 조례 개정을 통하여 효율적인 「용진군 군민의 날」 추진을 도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용진군 군민의 날(이하 “군민의 날”이라 한다)을 설정함으로써 군민 상호간의 친목과 단합을 도모하며 향토애를 고취하고 전래의 미풍양속을 숭상하여 애항심을 고취시켜 군민 복지증진과 향토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군민의 날) (생략)</p> <p>제2조의1(운영)</p> <p style="text-align: center;"><u><신 설></u></p> <p>제2조의2(재정지원)</p> <p style="text-align: center;"><u><신 설></u></p> <p>제3조(위임규정) (생략)</p> <p>부 칙</p> <p>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1조(목적) <u>이 조례는 용진군 군민의 날(이하 “군민의 날”이라 한다)을 정함으로써 향토 고유의 미풍양속을 계승하여 애항심과 자치의식을 고취시키고, 군민 모두가 이 날을 축하하고 기념하며 상호 간의 친목과 단합을 도모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u></p> <p>제2조(군민의 날) (현행과 같음)</p> <p>제2조의1(운영) ① <u>용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매년 군민의 날을 기념하고 용진군민으로서의 자긍심과 일체감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추진할 수 있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군민의 날 기념행사</u> 2. <u>각 부문 군민상 시상</u> 3. <u>기타 군민의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사</u> <p>② <u>군민의 날 기념행사는 당일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u></p> <p>제2조의2(재정지원) ① <u>군수는 제2조의1 제1항 각 호의 행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u></p> <p>② <u>제1항의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용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u></p> <p>제3조(위임규정) (현행과 같음)</p> <p>부 칙</p> <p>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용진군 군민의 날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용진군 군민의 날 (이하 “군민의 날”이라 한다)을 설정함으로써 군민 상호간의 친목과 단합을 도모하며 향토애를 고취하고 전래의 미풍양속을 숭상하여 애향심을 고취시켜 군민 복지증진과 향토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용진군 군민의 날(이하 "군민의 날"이라 한다)을 정함으로써 향토 고유의 미풍양속을 계승하여 애향심과 자치의식을 고취시키고, 군민 모두가 이 날을 축하하고 기념하며 상호 간의 친목과 단합을 도모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군민의 날) 매년 9월 20일을 군민의 날로 한다.

<신설안> 제2조의1(운영) ① 용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매년 군민의 날을 기념하고 용진군민으로서의 자긍심과 일체감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추진할 수 있다.

1. 군민의 날 기념행사
2. 각 부문 군민상 시상
3. 기타 군민의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사

② 군민의 날 기념행사는 당일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신설안> 제2조의2(재정지원) ① 군수는 제2조의1 제1항 각 호의 행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용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3조(위임규정)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이를 따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용진군 경로당 지원 조례 제정조례안

연구보고

연구 번호	212
----------	-----

2020.12.09.
조례입법정책연구회

1. 연구경위

- 2020. 12. 09. 조례입법정책연구회 연구(2020. 12. 09. 회부)

2. 연구이유

- 「노인복지법」 제47조에 따라 노인복지 향상을 위해 운영하고 있는 용진군 내 경로당 운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3. 주요내용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라 노인여가복지시설로 신고 된 경로당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음. (안 제2조)
-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경로당 운영 실태를 조사하고 지원계획을 수립할 수 있음. (안 제3조)
- 시설 및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음. (안 제4조)

1. 경로당 설치비
2. 경로당 리모델링, 개보수 사업비
3. 경로당 시설 운영비 및 간식비
4. 경로당 시설 냉난방비
5. 경로당 시설 환경개선(장비 및 비품보강) 사업비
6. 그 밖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군수는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경로당 순회전담 관리자를 배치하고 교육 및 여가활동 등 각종 프로그램을 개발·지원할 수 있다. (안 제5조)

○ 군수는 경로당에 대해 시설운용 및 지원 보조금 회계에 관련된 사항, 회원에 대한 권익보호증진 관리 등 경로당 관리에 대한 전반적 사항을 지도·감독할 수 있음. (안 제7조)

○ 군수는 지도·감독을 통하여 모범 경로당으로 선정된 경우 지원액의 차등지원이나 표창, 성과금 또는 지원물품을 예산의 범위에서 우선 지급할 수 있음. (안 제7조)

4. 연구의견

○ 조례 제정을 통하여 효율적인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도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용진군 경로당 지원 조례 제정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제47조에 따라 노인복지 향상을 위해 운영하고 있는 용진군 내 경로당 운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대상) 용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라 노인여가복지시설로 신고된 경로당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3조(지원계획 수립) 군수는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경로당 운영 실태를 조사하고 지원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제4조(경로당 지원 등) 군수는 시설 및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경로당 설치비
2. 경로당 리모델링, 개보수 사업비
3. 경로당 시설 운영비 및 간식비
4. 경로당 시설 냉난방비
5. 경로당 시설 환경개선(장비 및 비품보강) 사업비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프로그램 개발 지원 등) 군수는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경로당 순회전담 관리자를 배치하고 교육 및 여가활동 등 각종 프로그램을 개발·지원할 수 있다.

제6조(보조금의 지원 등) ① 군수는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경로당의 시설규모, 이용인원, 운영실태 등을 고려하여 보조금

을 차등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지도·감독) ① 군수는 경로당에 대해 시설운영 및 지원 보조금 회계에 관련된 사항, 회원에 대한 권익보호증진 관리 등 경로당 관리에 대한 전반적 사항을 지도·감독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지도·감독을 통하여 모범 경로당으로 선정된 경우 표창, 성과금 또는 지원물품을 예산의 범위에서 우선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준용) 보조금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은 「용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용진군 환경 기본 조례 제정조례안

연 구 보 고

연 구 번 호	213
------------	-----

2020.12.09.
조례입법정책연구회

1. 연구경위

○ 2020. 12. 09. 조례입법정책연구회 연구(2020. 12. 09. 회부)

2. 연구이유

○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라 용진군의 환경보전에 관한 기본이념과 책무 등을 규정하고 환경보전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여 쾌적한 생활환경과 자연환경을 조성·보전함.

3. 주요내용

○ 용진군의 환경보전은 모든 군민이 쾌적한 생활을 영위함에 필요한 환경을 조성하여 미래세대에 계승함으로써 인간과 자연이 조화롭게 공존하며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생태적으로 건강한 용진을 가꾸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함. (안 제2조)

○ 군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본원칙으로 하여 환경보전을 추진하여야 함. (안 제3조)

1. 군의 모든 행정과 사업은 환경보전을 우선적으로 고려.

2. 오염되거나 훼손된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은 그 원래의 기능이 복원되도록 노력.
3. 환경보전 부문 전문인력을 양성.
4. 자기 행위 또는 사업활동으로 인하여 환경오염을 야기한다면 그 오염의 방지와 오염된 환경의 복원 및 피해구제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

○ 군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기본적인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 할 책무를 짐.(안 제5조)

1. 대기, 물, 토양, 동식물 등 자연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2. 대기, 물, 토양의 오염방지에 관한 사항
3. 야생동·식물의 보전 및 생물종 다양성의 확보 등 지역여건에 적합한 자연생태계 보전에 관한 사항
4. 인간과 자연의 공존, 양호한 경관의 보전, 역사적·문화적 유산의 보전 등에 관한 사항
5. 폐기물의 적정처리와 감량에 관한 사항
6. 환경보전을 위한 군민의 참여와 협력강화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환경오염방지에 관한 사항

○ 군수는 환경 보전시책의 원활한 추진에 기여하고 군민에게 환경현황 및 환경보전 시책의 내용과 추진상황 등을 알리기 위하여 환경백서를 작성하고 공표할 수 있음. (안 제9조)

○ 군수는 「환경정책기본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환경보전시책의 종합적이고 계획적인 추진을 위하여 용진군 환경보전계획(이하 “환경보전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함.(안 제10조)

○ 군수는 군에서 시행하고자 하는 사업이 환경에 현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환경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여 환경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안 제11조)

○ 군수는 환경보전시책의 결정·집행·평가 등의 환경행정에 군민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함.(안 제14조)

○ 읍·면, 교육기관, 민간단체, 관계기관 등과 협력하여 환경보전 교육을 보다 충실히 함으로써 군민 및 사업자의 환경보전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자발적인 환경보전활동이 촉진되도록 자료의 제작·보급 및 군민환경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수 있음.(안 제16조)

4. 연구의견

○ 조례 제정을 통하여 「용진군 생태환경보전」에 따른 군민의 삶의 질을 더욱 높여나가야 할 것으로 사료됨.

용진군 환경 기본 조례 제정조례안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용진군의 환경보전에 관한 기본이념과 책무 등을 규정하고 환경보전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여 쾌적한 생활환경과 자연환경을 조성·보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용진군(이하 "군" 이라 한다)의 환경보전은 모든 군민이 쾌적한 생활을 영위함에 필요한 환경을 조성하여 미래세대에 계승함으로써 인간과 자연이 조화롭게 공존하며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생태적으로 건강한 용진을 가꾸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3조(기본원칙) 군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본원칙으로 하여 환경보전을 추진하여야 한다.

1. 군의 모든 행정과 사업은 환경보전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2. 오염되거나 훼손된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은 그 원래의 기능이 복원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3. 군은 환경보전 부문 전문인력을 양성하여야 한다.
4. 자기의 행위 또는 사업활동으로 인하여 환경오염을 야기한다면 그 오염의 방지와 오염된 환경의 복원 및 피해구제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5. 환경과 관련된 정보는 공개되어야 하며 군민은 환경보전에 스스로 참여하여야 한다.

제4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환경" 이란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말한다.
2. "자연환경" 이란 지하, 지표(해양을 포함한다) 및 지상의 모든 생물과 이들을 둘러싸고 있는 비생물적인 것을 포함한 자연의 상태를 말한다.

3. "생활환경"이란 대기, 물, 토양, 폐기물, 소음·진동, 악취, 일조, 인공조명 등 사람의 일상생활과 관계되는 환경을 말한다.
4. "환경오염"이란 사업활동 및 그 밖의 사람의 활동에 따라 발생하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해양오염, 방사능오염, 소음·진동, 악취, 일조방해,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등으로서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상태를 말한다.
5. "환경보전"이란 환경오염 및 환경훼손으로부터 환경을 보호하고 오염되거나 훼손된 환경을 개선함과 동시에 쾌적한 환경의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모든 행위를 말한다.
6. "환경복원"이란 자연적 또는 인위적으로 훼손 또는 오염된 환경을 그 원래의 기능이 발휘되도록 원래의 형태로 복원시키는 것을 말한다.

제5조(군의 책무) 군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기본적인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 할 책무를 진다.

1. 대기, 물, 토양, 동식물 등 자연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2. 대기, 물, 토양의 오염방지에 관한 사항
3. 야생동·식물의 보전 및 생물종 다양성의 확보 등 지역여건에 적합한 자연생태계 보전에 관한 사항
4. 인간과 자연의 공존, 양호한 경관의 보전, 역사적·문화적 유산의 보전 등에 관한 사항
5. 폐기물의 적정처리와 감량에 관한 사항
6. 환경보전을 위한 군민의 참여와 협력강화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환경오염방지에 관한 사항

제6조(사업자의 의무) ① 사업자는 사업활동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각종 환경오염물질을 적정하게 처리하고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군의 환경보전 시책에 협력할 책무를 진다.

② 사업자는 원료의 획득, 제품의 제조·가공·판매 등 전과정을 환경친화적으로 개선하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에 힘쓰고 오염물질의 배출을 저감하며, 군의 환경목표 달성을 위하여 협력하여야 한다.

③ 사업자는 사업활동에 관계되는 제품 또는 그 밖의 물건이 사용되고 폐기됨에 따라 발생하는 환경오염의 저감을 위해 지속적인 연구활동을 하고 필요한 정보의 제공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④ 사업자는 군민, 단체의 연구 및 홍보사업 등 환경보전활동에 적극 협조하고 환경보전운동이 지역사회로 확산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군민의 권리 및 책무) ① 군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② 군민은 일상생활에서 환경친화적인 생활양식의 정착을 위해 스스로 노력하여야 하며 군이 시행되는 환경보전 시책에 협력할 책무를 진다.

③ 군민은 환경보전을 위한 실천을 생활화 하여야 하며 특히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노력하여야 한다.

1. 환경오염행위 발견시에는 현장에서 계도하거나 관계기관에 신고하는 등 적극적인 행동을 하여야 한다.

2. 환경문제와 관련하여 무조건적인 반대나 지역 이기주의를 지양하고 문제해결을 위한 실천적 대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3. 환경정책 수립과정이나 추진과정에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4. 생활공간 주변의 환경에 대한 자율적인 보전활동과 개선으로 쾌적한 생활환경이 조성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민간환경단체 등 군민단체는 군민의 환경보전 실천의지를 높이기 위한 홍보와 환경오염 감시 등의 환경보전 활동을 할 수 있다.

제8조(학교의 역할) 학교는 자라나는 청소년의 건전한 환경가치관의 정립과 실천을 생활화 할 수 있도록 지속적이고 체험적인 환경교육을 실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백서발간) ① 군수는 환경 보전시책의 원활한 추진에 기여하고 군민에게 환경현황 및 환경보전 시책의 내용과 추진상황 등을 알리기 위하여 환경백서를 작성하고 공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백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환경현황에 대한 사항
2. 환경보전과 관련한 주요시책 내용과 추진상황
3. 그 밖에 환경보전에 관한 주요사항

제 2 장 환경보전에 관한 기본시책

제10조(환경보전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환경정책기본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환경보전시책의 종합적이고 계획적인 추진을 위하여 용진군 환경보전계획(이하 “환경보전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환경보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인구, 주택, 산업, 교통 및 토지이용 등 사회 환경에 관한 사항
2. 환경오염도 및 오염물질 배출량의 예측과 환경변화 여건 등 생활환경에 관한 사항
3. 환경 목표 설정과 이를 달성하기 위한 단계별 대책 및 사업계획
4. 사업의 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조달 방법
5. 그 밖에 환경보전에 관한 주요사항

③ 군수는 환경보전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할 때에는 「환경정책기본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절차에 따라야 한다.

④ 군수는 환경보전계획 수립시 군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이를 확정한다.

제11조(환경영향 검토) 군수는 군에서 시행하고자 하는 사업이 환경에 현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환경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여 환경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2조(환경시설의 설치·관리 등) 군수는 폐기물 및 하수처리시설, 해양오염방지 등을 위한 각종 친환경정책 개발과 생태 환경 보전을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한다.

제13조(자연환경의 보전) ① 군과 군민은 자연환경과 생태계 보전이 인간의 생존 및 생활의 기본임에 비추어 자연의 질서와 균형이 유지·보전되

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자연환경은 다음의 기본원칙에 따라 보전되어야 한다.

1. 자연환경의 보전은 조화와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2. 자연환경은 오염과 훼손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

3. 야생 동·식물은 보호되어야 하며 그 종속과 서식처는 보존되어야 한다.

③ 군수는 공원 및 녹지의 설치 등 자연환경의 적정한 보전과 관리 또는 건전한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14조(군민참여) 군수는 환경보전시책의 결정·집행·평가 등의 환경행정에 군민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5조(정보의 공개) 군수는 환경보전시책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군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 자발적인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개인 및 법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환경보전에 관한 필요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제16조(환경교육·홍보 등) 군수는 면, 교육기관, 민간단체, 관계기관 등과 협력하여 환경보전 교육을 보다 충실히 함으로써 군민 및 사업자의 환경보전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자발적인 환경보전활동이 촉진되도록 자료의 제작·보급 및 군민환경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수 있다.

제17조(환경조사 및 연구의 실시 등) ① 군수는 환경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감시·측정 등의 체계를 정비하고 지역내 환경질에 대한 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관계전문가와 군민·군민단체 등을 조사에 참여시킬 수 있다.

② 군수는 환경보전시책을 적정하게 실행하기 위하여 환경오염방지, 자연환경보전 등 그 밖에 환경보전에 관한 정보의 수집에 노력함과 동시에 과학적인 조사·연구의 실시와 기술개발 및 그 성과의 보급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18조(분쟁의 처리 및 피해규제) 군수는 환경오염으로 인한 분쟁을 신속하고 적정하게 처리하고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의 원활한 구제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9조(환경보전활동에 대한 재정지원 등) ① 군수는 환경보전 및 개선을 위한 시책추진에 소요되는 경비의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재정상의 조치를 강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군민, 사업자, 민간환경단체 등이 추진하는 자주적인 환경보전활동의 촉진을 위하여 시설의 설치·운영조사·연구 등에 필요한 기술지도 또는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제20조(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 군수는 환경보전을 위하여 광역적인 대처가 필요한 시책은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는 등 그 추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용진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연 구 보 고

연구 번호	214
----------	-----

연구연월일 : 2020.12.09.
조례입법정책연구회

1. 연구이유

「지방자치법」 제134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 및 제84조에 따른 결산검사위원의 선임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여 합리적인 금고업무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결산검사위원의 정수는 5명으로 함. 다만, 용진군의회 의원은 결산검사위원 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음. (안 제2조)

나. 위원은 용진군의회 의장이 추천하여 의회의 의결로써 선임함. (안 제3조)

다. 위원은 비상근으로 하고 위촉기간은 20일 이내로 함. 다만, 의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은 연장할 수 있음. (안 제4조)

라. 위원 중에서 대표위원을 선출하되 의회의 의원인 위원이 됨.
대표위원은 위원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검사결과에 대하여 의회의 출석
요구가 있을 때에는 출석하여 설명함. (안 제6조)

마. 결산검사 업무범위 (안 제7조)

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의견서를 군수
에게 제출할 때에는 모든 위원이 연명으로 서명하여야 함. (안 제9조)

사. 결산검사위원 수당 조정 (별표)

3. 제정조례안 : 붙임

4.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생략</p>	<p>제1조(목적) (현행과 같음)</p>
<p>제2조(위원의 정수) 결산검사위원 (이하"위원"이라 한다)의 정수는 3명 이상 5명 이하로 한다. 다만, 용진군의회 의원은 결산검사위원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p>	<p>제2조(위원의 정수) ----- ----- <u>5명으</u> <u>로 한다.</u> ----- ----- -----.</p>
<p>제3조(선임방법 및 절차)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은 용진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가 선임한다. 다만, 위원중 1명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으로 할 수 있다.</p> <p>② 생략 ③ 생략 ④ 생략</p>	<p>제3조(선임방법 및 절차)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은 용진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가 선임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u><단서 삭제></u></p> <p>②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④ (현행과 같음)</p>
<p>제8조(검사협조) 군수 및 금고의 책임자는 위원으로부터 결산검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설명을 요청받은 때에는 <u>사유가 없는 한</u>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p>	<p>제8조(검사협조) ----- ----- ----- ----- <u>특별한 사유가 없는</u> ----- -----.</p>

용진군 결산검사위원회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4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 및 제84조에 따른 결산검사위원회의 선임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의 정수) 결산검사위원회(이하"위원회"이라 한다)의 정수는 3명 이상 5명 이하로 한다. 다만, 용진군의회 의원은 결산검사위원회 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안) 제2조(위원의 정수) 결산검사위원회(이하"위원회"이라 한다)의 정수는 5명으로 한다. 다만, 용진군의회 의원은 결산검사위원회 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제3조(선임방법 및 절차)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은 용진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가 선임한다. 다만, 위원중 1명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으로 할 수 있다.

② 의회에서 위원을 위촉하고자 할 때에는 그가 소속한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의 사전승낙을 받아야 한다.

③ 위원은 용진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추천하여 의회의 의결로써 선임한다.

④ 의장은 선임된 위원에 대하여는 별표 제1호서식에 의한 위촉장을 교부한다.

(개정안) 제3조(선임방법 및 절차)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은 용진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가 선임한다.

② 의회에서 위원을 위촉하고자 할 때에는 그가 소속한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의 사전승낙을 받아야 한다.

③ 위원은 용진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추천하여 의회의 의결로써 선임한다.

④ 의장은 선임된 위원에 대하여는 별표 제1호서식에 의한 위촉장을 교부한다.

제4조(위촉기간) ① 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② 위원의 위촉기간은 20일 이내로 한다. 다만, 의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은 연장할 수 있다.

제5조(겸임금지 및 결격) ① 위원은 용진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상근 직원을 겸할 수 없다.

② 군의 결산업무와 직접 관련 있는 공무원 및 의회 의원의 배우자, 친지 또는 형제·자매인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제6조(대표위원) ① 위원중에서 대표위원을 선출하되 의회의 의원인 위원이 된다.

② 대표위원은 위원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검사결과에 대하여 의회의 출석 요구가 있을 때에는 출석하여 설명한다.

③ 대표위원이 유고시에는 의장이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결산검사의 내용과 범위) ① 위원은 결산에 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검사한다.

1. 세입세출 결산
2. 계속비, 명사이월비 및 사고이월비의 결산
3. 채권 및 채무의 결산
4. 재산 및 기금의 결산
5. 금고의 결산

② 「지방공기업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이 직접설치 경영하는 사업에 대한 결산검사는 「지방공기업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로 이를 갈음한다.

제8조(검사협조) 군수 및 금고의 책임자는 위원으로부터 결산검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설명을 요청받은 때에는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안) 제8조(검사협조) 군수 및 금고의 책임자는 위원으로부터 결산검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설명을 요청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9조(검사의견서의 제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의견서를 군수에게 제출할 때에는 모든 위원이 연명으로 서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 간에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을 때에는 다른 의견도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수당의 지급) 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위촉기간중에서 위원에게 수당을 지급한다.

② 수당은 결산검사가 종료되는 날에 일시불로 지급한다.

제11조(수당의 계산) ① 제10조 규정에 의한 수당의 지급은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촉기간중에서 실제로 검사개시일로부터 검사 의견서를 제출한 날까지로 한다. 다만, 위촉 기간 만료이후 의회의 의원 아닌 위원이 의회에 출석하여 설명하게 되는 때에는 수당을 지급한다.

② 제1항의 검사일수에는 검사기간중의 공휴일과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여행기간은 이에 포함한다.

제12조(여비의 지급) 위원이 결산검사에 관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여행하는 때에는 여비를 지급한다.

제13조(지급기준) 위원의 수당 또는 여비는 별표 제2호에 의하여 지급한다. 다만, 이 조례에 규정된 여비 지급기준 외에는 공무원 여비규정에 준

한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는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제1호 서식]

가) 나) 다) 위 측 장	○ ○ ○
용진군 결산검사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귀하를 20 년 월 일부터 20 년 월 일까지 일간 결산검사 위원 으로 위촉합니다.	
200 년 월 일	
<u>용진군 지방의회의장</u> 인	

[별표 제2호 서식]

구 분	액 수
수 당	<u>100,000원</u>
여 비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1 여비 지급 구분표상의 부군수 상당액

(개정안)

[별표 제1호 서식]

라)	
마)	
바) 위	촉 장
	○ ○ ○
용진군 결산검사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귀하를 20 년 월 일부터 20 년 월 일까지 일간 결산검사 위원 으로 위촉합니다.	
	200 년 월 일
	용진군의회 의장 인

[별표 제2호 서식]

구 분	액 수
수 당	150,000원
여 비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1 여비 지급 구분표상의 부군수 상당액

용진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연 구 보 고

연 구 번 호	215
------------	-----

2020.12.09.
조례입법정책연구회

1. 연구경위

- 2020. 12. 09. 조례입법정책연구회 연구(2020. 12. 09. 회부)

2. 연구이유

「아동복지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용진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또한, 군에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두어 아동학대 조사업무 등을 수행하게 하고, 조사 후에는 피해아동보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등 아동학대 조사체계를 공공 중심으로 개편하는 등의 내용으로 「아동복지법」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 검토함.

3. 주요내용

-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함. (안 제3조)

○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 금지.(안 제13조)

○ 군에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두어 아동학대 조사업무 등을 수행하고, 조사 후에는 피해아동보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등 아동학대 조사체계를 확립함. (안 제14조)

4. 연구의견

○ 조례 개정을 통해 효율적인 「용진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운영을 도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p>제1조 ~ 제2조 (생략)</p> <p>제3조(구성)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u>10명 이내의</u>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p> <p>① (생략)</p> <p>② (생략)</p> <p>제4조 ~ 제13조 (생략)</p> <p>제14조 <u><신설></u></p> <p>제14조를 제15조로 (이동)</p> <p>제15조를 제16조로 (이동)</p>	<p>제1조 ~ 제2조 (현행과 같음)</p> <p>제3조(구성) ----- ----- <u>15명 이내의</u> ----- -----.</p> <p>① (현행과 같음)</p> <p>② (현행과 같음)</p> <p>제4조 ~ 제13조 (현행과 같음)</p> <p><u>제14조(아동학대전담공무원) 군에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두어 아동학대 조사업무 등을 수행하고, 조사 후에는 피해아동보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등 아동학대 조사체계를 확립한다.</u></p> <p>제15조 ~ 16조 (현행과 같음)</p>

용진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용진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용진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용진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1. 「아동복지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8조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법 제15조에 따른 보호대상 아동의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3. 법 제16조에 따른 보호대상 아동의 퇴소조치에 관한 사항
4. 법 제18조에 따른 친권행사의 제한이나 친권상실 선고 청구에 관한 사항
5. 법 제19조에 따른 아동의 후견인의 선임이나 변경 청구에 관한 사항
6. 지원대상 아동의 선정과 그 지원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아동의 보호 및 지원서비스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안) 제3조(구성)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복지업무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옹진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는 사람과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위원이 각각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1. 인천광역시 남부교육지원청 또는 고용노동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에 소속된 공무원으로서 아동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하였던 사람
2. 변호사, 의사 또는 교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아동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아동단체 또는 시민단체에서 아동분야 업무를 3년 이상 전문적으로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하였던 사람
4. 그 밖에 아동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장 및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의 위촉해제)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가 사임을 표명한 경우
2. 위원의 사망, 질병, 장기출타 등으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는 경우
3.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제3항에 해당되어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한 경우
4. 제13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5.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품위 등을 손상하였을 경우

제6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8조(회의의 비공개) 위원회는 비공개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관계법령에 따라 특정인의 참여 또는 공개를 규정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의 규정에 따른다.

제9조(위원의 제척·회피·기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심의대상과 관련하여 직접·간접적으로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이 경우 위원회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제척의 결정을 한다.

②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 대하여 회피할 수 있다. 이 경우 회피하고자 하는 위원은 위원장에게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③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조정 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밝혀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위원장은 기피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하였을 때에는 기피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④ 제척·기피·회피된 위원은 회의 심의 정족수에서 제외한다.

⑤ 제척·기피·회피의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위원에 대하여 임명 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제10조(우선조치) 군수는 제2조제2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사항 중 위원회 개최 및 심의 등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어 해당 아동에 대한 보호조치가 신속·적정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것으로 판단될 경우, 해당 아동의 의사를 존중하고 최상의 이익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우선보호 조치를 실시하고 위원회의 사후 심의를 받도록 할 수 있다.

제11조(간사 등)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각각 1명을 두며, 간사는 아동업무담당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자로 한다.

제12조(자료제출의 요구 등) 위원회의 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위원회에 출석하여 설명하게 하거나 이해관계인 및 그 밖에 참고인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3조(비밀누설 금지)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신설안> 제14조(아동학대 전담공무원) 군에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두어 아동학대 조사업무 등을 수행하고, 조사 후에는 피해아동보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등 아동학대 조사체계를 확립한다.

제15조(실비보상) 위원회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웅진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용진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연 구 보 고

연 구 번 호	216
------------	-----

2020.12.09.
조례입법정책연구회

1. 연구경위

○ 2020. 12. 09. 조례입법정책연구회 연구(2020. 12. 09. 회부)

2. 연구이유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개정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더욱 구체적으로 보강하여 규정함.

3. 주요내용

○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7조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함. (안 제2조)

○ 영 제10조제1항제2호 또는 제4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할 때에는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영 제13조제1항에 따른 적극행정 우수 공무원 선발은 반기별로 적극행정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소속 공무원 중에서 적극행정공무원을 선발해야 함. (안 제3조)

○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적극행정위원회를 설치함.(안 제4조)

1. 영 제7조에 따른 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3. 영 제15조제6항에 따른 면책 건의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적극행정 과제 발굴 등 적극행정 관련 정책의 수립·추진에 관한 사항

○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 11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함. (안 제5조)

4. 연구의견

○ 조례 개정을 통하여 효율적인 「용진군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을 도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생략</p> <p>제2조(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등) ① ~ ③ 생략</p> <p>제3조(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사항의 심의) 영 제10조제2항에 따라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지방공무원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인사위원회가 심의한다.</p> <p>1. 영 제10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p> <p>2. 영 제13조제1항에 따른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p> <p style="text-align: center;"><u><신 설></u></p> <p style="text-align: center;"><u><신 설></u></p>	<p>제1조(목적) (현행과 같음)</p> <p>제2조(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p> <p><u>제3조(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사항의 심의) 군수는 영 제10조제1항제2호 또는 제4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할 때에는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영 제13조제1항에 따른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은 반기별로 적극행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 의결을 거쳐 소속 공무원 중에서 적극행정공무원을 선발해야 한다.</u></p> <p><u>제4조(적극행정위원회 등) ① 군수는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적극행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u></p> <p><u>1. 영 제7조에 따른 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u></p> <p><u>2.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u></p> <p><u>3. 영 제15조제6항에 따른 면책 건의에 관한 사항</u></p> <p><u>4. 그 밖에 적극행정 과제 발굴 등 적극행정 관련 정책의 수립·추진에 관한 사항</u></p> <p><u>제5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 11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의 2분의 1 이상은 민간 위원으로 한다.</u></p>

현행	개정안
<p data-bbox="411 409 544 443"><u><신 설></u></p> <p data-bbox="395 1480 528 1514"><u><신 설></u></p> <p data-bbox="395 1686 528 1720"><u><신 설></u></p> <p data-bbox="188 1787 719 1877">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 data-bbox="788 353 1406 696"><u>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위원은 해당 업무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및 관계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공공부문 또는 민간부문의 감사부서에서 근무하고 있거나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을 포함해야 한다.</u></p> <p data-bbox="788 712 1406 954"><u>③ 위원회의 회의는 제4항에 따른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u></p> <ol data-bbox="788 969 1406 1261" style="list-style-type: none"> <u>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u> <u>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u> <u>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의 출석에 따른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u> <p data-bbox="788 1276 1406 1464"><u>⑤ 위원장은 심의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해관계자를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관련 자료 또는 의견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u></p> <p data-bbox="788 1480 1406 1668"><u>제6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웅진군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u></p> <p data-bbox="788 1684 1406 1771"><u>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u></p> <p data-bbox="788 1787 1318 1877">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용진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등) ① 용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의 계획에 따른 추진사항을 정기 또는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제3조(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사항의 심의) 영 제10조제2항에 따라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지방공무원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인사위원회가 심의한다. 이 경우 영 제10조제1항제2호 또는 제4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할 때에는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1. 영 제10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
2. 영 제13조제1항에 따른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개정안) 제3조(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사항의 심의) 군수는 영 제10조제1항제2호 또는 제4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할 때에는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영 제13조제1항에 따른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은 반기별로 적극행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 의결을 거쳐 소속 공무원 중에서 적극행정공무원을 선발해야 한다.

<신설안> 제4조(적극행정위원회 등) ① 군수는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적극행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영 제7조에 따른 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3. 영 제15조제6항에 따른 면책 건의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적극행정 과제 발굴 등 적극행정 관련 정책의 수립·추진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5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 11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의 2분의 1 이상은 민간위원으로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위원은 해당 업무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및 관계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공공부문 또는 민간부문의 감사부서에서 근무하고 있거나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을 포함해야 한다.

③위원회의 회의는 제4항에 따른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의 출석에 따른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⑤위원장은 심의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해관계자를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관련 자료 또는 의견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신설안> 제6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웅진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신설안>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용진군 문화시설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연 구 보 고

연 구 번 호	217
------------	-----

2020.12.09.
조례입법정책연구회

1. 연구경위

○ 2020. 12. 09. 조례입법정책연구회 연구(2020. 12. 09. 회부)

2. 연구이유

「국가유공자법」 등 국가보훈처 소관6개 법령에서 보훈대상자 본인 및 그 가족 · 유족에 대한 이용요금 감면을 규정하고 있어 관련 감면대상자를 정비하여 국가·사회를 위해 자신을 희생한 보훈대상자 등에 대한 예우에 어려움이 없도록 규정함.

3. 주요내용

가. 제13조(이용료의 면제)제1호 ~ 제6호, 정비

나. 제13조(이용료의 면제)제7호 ~ 제15호, 신설

- 관련 법에 의한 보훈관계 대상자

→ 고엽제후유의증환자, 특수임무유공자, 국군포로송환법에

따른 등록포로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관람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3. 개정조례안 : 별첨

4. 신·구조문 대비표 : 별첨

5. 관계법령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7조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86조제1항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23조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5조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59조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52조제1항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제10조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0조의3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4조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58조
- 「국군포로의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 제15조의4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6조

4. 연구의견

- 조례 개정을 통하여 효율적인 「용진군 문화시설관리」의 적정 운영을 도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용진군 문화시설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진군 문화시설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제7호부터 제15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만 6세 이하 및 만 65세 이상의 사람. 다만, 65세 이상의 사람은 주민등록증 등 기타 연령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소지한 사람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3.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4. 당해도서에 거주하는 주민
5.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6.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7.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8.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
9.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장기복무제대군인
10.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 및 그를 동행하는 보호자 1명 및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11. 「공직선거법」 제2조 및 「지방교육 자치에 관한 법률」 제8조와 제22조에 따른 선거에 있어서 투표에 참여한 자로서 선거관리위원회가 발급한 투표확인증(해당 선거의 선거일후 3개월까지 유효함)을 제출한 사람
12.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3.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3 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
14.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15.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3조(이용료의 면제) 다음 각 호 1에 해당하는 자가 심청각 시설을 이용할 때에는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이용료 중 입장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p> <p>1. 만 6세 이하의 자 및 만 65세 이상의 자. 다만, 65세 이상의 자는 주민등록증 등 기타 연령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소지한 자에 한한다.</p> <p>2.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p> <p>3.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p> <p>4. 당해도서에 거주하는 주민</p> <p>5.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자</p> <p>6.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p> <p style="text-align: center;"><u><신 설></u></p>	<p>제13조(이용료의 면제) 현행과 같음</p> <p>1. 만 6세 이하 및 만 65세 이상의 사람. 다만, 65세 이상의 사람은 주민등록증 등 기타 연령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소지한 사람</p> <p>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p> <p>3.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과 그를 동행하는 보호자 1명 및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인</p> <p>4. (현행과 같음)</p> <p>5.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p> <p>6.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p> <p>7.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p> <p>8.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p>

현행	개정안
<p style="text-align: center;"><u><신 설></u></p> <p style="text-align: center;">부 칙</p> <p>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9.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 10.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장기복무제대군인 11. 「공직선거법」 제2조 및 「지방교육 자치에 관한 법률」 제8조와 제22조에 따른 선거에 있어서 투표에 참여한 자로서 선거관리위원회가 발급한 투표확인증(해당 선거의 선거일후 3개월까지 유효함)을 제출한 사람 12.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3.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3 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 14.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15.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 <p style="text-align: center;">부 칙</p> <p>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용진군 문화시설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통문화 발굴계승과 지방문화예술창달 및 도서주민의 문화혜택을 위한 문화시설(이하 “문화시설”이라 한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문화시설) 문화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심청각
2. 공공도서관

제3조(위치) 문화시설의 위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심청각 : 인천광역시 용진군 백령면 진촌리 산146-10번지
2. 공공도서관 : 인천광역시 용진군 백령면 진촌리 689-4번지

제4조(운영 및 위탁관리) ① 문화시설은 군수가 관리 운영한다. 다만,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지역 주민 및 단체 등에게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를 위탁받은 단체(이하 “수탁관리자”라 한다)는 타인에게 관리권을 전대하지 못한다.

제5조(위탁계약) 제4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내용으로 하여야 한다.

1. 위탁기간
2. 손해배상 및 책임에 관한 사항
3. 계약 이행을 위한 담보에 관한 사항
4. 위탁금 지급에 관한 사항
5. 계약 종료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위탁에 관한 사항

제6조(사용허가) ① 문화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 또는 수탁관리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수탁관리자는 제1항의 허가를 함에 있어서 시설물 또는 부지의 합리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이거나 사용자로부터 서약서를 징구할 수 있다.

제7조(사용허가 취소) 군수 또는 수탁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청각 시설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2.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3.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사용이 불가능할 때
4. 기타 수탁관리자가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

제8조(수탁관리자의 의무) ① 수탁관리자는 위탁운영 기간중 문화시설물에 대하여 성실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수탁관리자는 보조금 및 사용재산을 문화시설 운영에 직접 사용하여야 한다.

③ 수탁 관리자는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9조(수탁관리자의 신고) 수탁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사용기간 중에 시설물 또는 부지의 사용을 폐지하고자 할 때
2. 사용대상물에 이상이 있을 때
3. 기타군수가 지시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제10조(위탁의 취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관리자가 제8조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2. 수탁관리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3. 수탁관리자가 위탁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4. 유지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시설을 임의로 변경하였을 때
5. 기타 공익상 위탁운영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제11조(이용료의 징수 및 반환) ① 문화시설을 이용하는 자에 대하여 별표 기준에 의한 이용료를 징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징수한 이용료는 군의 세입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관리운영을 위탁하였을 경우에는 수탁관리자가 이용료를 징수하여 문화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충당한다.

③ 이용료는 선납으로 하며 이미 징수한 이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제12조(요금의 게시) 군수 또는 수탁관리자는 이용료를 이용자가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13조(이용료의 면제) 다음 각 호 1에 해당하는 자가 심청각 시설을 이용할 때에는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이용료 중 입장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1. 만 6세 이하의 자 및 만 65세이상의 자. 다만, 65세 이상의 자는 주민등록증 등 기타 연령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소지한 자에 한한다.
2.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
3.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4. 당해도서에 거주하는 주민
5.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자
6.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개정안) 제13조(이용료의 면제) 다음 각 호 1에 해당하는 자가 심청각 시설을 이용할 때에는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이용료 중 입장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1. 만 6세 이하 및 만 65세 이상의 사람. 다만, 65세 이상의 사람은 주민등록증 등 기타 연령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소지한 사람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3.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과 그를 동행하는 보호자 1명 및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인
4. 당해도서에 거주하는 주민
5.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6.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7.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8.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9.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
10.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장기복무제대군인
11. 「공직선거법」 제2조 및 「지방교육 자치에 관한 법률」 제8조와 제22조에 따른 선거에 있어서 투표에 참여한 자로서 선거관리위원회가 발급한 투표확인증(해당 선거의 선거일후 3개월까지 유효함)을 제출한 사람
12.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3.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3 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
14.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15.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

제14조(이용료의 감면) 다음 각 호 1에 해당 할 때에는 문화시설의 이용료를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1. 공영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을 하고자 할 때
2. 영구히 전할 사적 또는 현저한 공적이 있는 기념비등을 설치하려 할

때

3. 기타 군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5조(손해배상) 수탁관리자 또는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문화시설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6조(지도감독) ①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위탁사무의 운영상황과 시설·장부·서류 등을 감사 또는 조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관리자는 감사 또는 조사에 응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 또는 조사결과 관계규정 위반사항이 발견될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7조(수입금의 사용제한) 이 조례에 의한 수입금중 요금징수에 필요한 경비를 제외하고는 문화시설의 보존 및 시설관리에 사용하여야 한다.

제18조(관리 및 이용료 징수위임) 문화시설의 관리 및 이용료 징수업무는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19조(운영비 보조) 군수는 문화시설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문화시설 관리 및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수탁관리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용진군 문화예술진흥조례 제정조례안

연 구 보 고

연 구 번 호	218
------------	-----

2020.12.09.
조례입법정책연구회

1. 연구경위

○ 2020. 12. 09. 조례입법정책연구회 연구(2020. 12. 09. 회부)

2. 연구이유

「문화예술진흥법」 및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용진군 문화예술 진흥을 도모하고 군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문화예술 사업이나 활동의 육성·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3. 주요내용

○ 군수는 지역 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군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하며 이를 적극 육성·보호 하여야 함.(안 제4조)

○ 군수는 군민의 문화예술 향유권 확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각종 문화예술행사, 축제 등 관련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고, 이에 필요한 예산을 적극 마련하여야 함.(안 제4조)

○ 군수는 지역문화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역문화진흥시행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함.(안 제5조)

1. 지역문화진흥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지역의 문화적 특성 및 실정에 맞는 지역문화진흥정책의 개발 및 추진에 관한 사항
3. 문화환경 취약지역 지원 등 문화격차 해소에 필요한 사항
4. 지역문화 전문인력의 양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시행계획 추진에 필요한 예산 및 재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지역문화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군수는 지역문화진흥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용진군 문화예술진흥위원회를 둘 수 있음.(안 제6조)

1. 문화예술 정책개발 및 수립에 관한 사항
2. 문화예술기반시설 조성 및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3. 지역 문화예술 활성화 방안에 관한 사항
4. 문화예술행사 관람료 책정 심의
5. 지역축제·문화행사의 육성 및 기획과 집행에 관한 사항
6. 문화진흥을 위하여 군수가 위탁하는 사업에 관한 사항
7. 그밖에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함. (안 제7조)

○ 군수는 문화예술 행사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행사 및 공연의 일부 또는 전부를 비영리 법인, 단체에 위탁할 수 있음.(제10조)

○ 군수는 보조금이 목적대로 집행되었는지 확인하고 지도와 감독을 하여야 함. (안 제11조)

4. 연구의견

○ 조례 제정을 통하여 효율적인 「용진군 지역문화예술」 진흥과 발전을 도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용진군 문화예술 진흥조례 제정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 및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용진군 문화예술 진흥을 도모하고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문화예술 사업이나 활동의 육성·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문화예술”이란 문학, 미술(응용미술을 포함한다),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 국악, 사진, 건축, 어문, 출판 및 만화를 말한다.
2. “지역문화예술단체”란 「문화예술진흥법」제7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로 용진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된 거소를 둔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
3. “전통문화”란 선조들로부터 전승되어온 고유한 문화로 가치 있고 계승할 만한 문화유산 및 세시풍속을 말한다.
4. “지역문화”란 군을 기반으로 하는 문화유산, 전통문화, 문화예술, 생활문화, 문화산업 및 이와 관련된 유형·무형의 문화적 활동을 말한다.
5. “생활문화”란 지역의 주민이 문화적 욕구 충족을 위하여 자발적이거나 일상적으로 참여하여 행하는 유형·무형의 문화적 활동을 말한다.

제3조(다른 법규와의 관계) 문화예술 진흥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시책과 장려) ① 용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역 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군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하며 이를 적극 육성·보호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군민의 문화예술 향유권 확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각종 문화예술행사, 축제 등 관련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고, 이에 필요한 예산을 적극 마련하여야 한다.

제5조(지역문화진흥시행계획 수립 등) ① 군수는 지역문화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역문화진흥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지역문화진흥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지역의 문화적 특성 및 실정에 맞는 지역문화진흥정책의 개발 및 추진에 관한 사항
 3. 문화환경 취약지역 지원 등 문화격차 해소에 필요한 사항
 4. 지역문화 전문인력의 양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시행계획 추진에 필요한 예산 및 재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지역문화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② 시행계획을 수립할 경우에는 지역문화 관련 기관 및 단체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6조(문화예술진흥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군수는 지역문화진흥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용진군 문화예술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문화예술 정책개발 및 수립에 관한 사항
2. 지역 문화예술 활성화 방안에 관한 사항
3. 지역축제·문화행사의 육성에 관한 사항
4. 그밖에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7조(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용진군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2. 용진군 업무담당 과장
3. 용진군 문화예술단체 대표 및 문화예술 분야 전문가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8조(위원회 운영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일 경우는 부결된 것으로 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1명의 간사를 두되, 문화예술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④ 위원회 활동에 참여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보조금 지원) 군수는 지역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문화예술 기반시설 확충 및 개선
2. 문화예술(전통문화를 포함한다) 행사 개최 및 활동지원
3.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가 간 문화예술교류
4. 지역문화예술단체 등 육성·지원
5. 그 밖에 지역주민의 문화예술 복지증진과 진흥을 위한 사업

제10조(행사의 위탁 및 지원) ① 군수는 문화예술 행사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행사 및 공연의 일부 또는 전부를 비영리 법인,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행사 및 공연의 운영을 위탁한 경우 그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지도·감독) ① 군수는 보조금이 목적대로 집행되었는지 확인하고 지도와 감독을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사람에 대하여 보조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

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내용을 확인·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보조금을 목적 외로 사용한 사람 또는 단체에게는 지원을 배제할 수 있다.

제12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보조금에 관한 사항은 「용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용진군 인성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

연 구 보 고

연 구 번 호	219
------------	-----

2020.12.09.
조례입법정책연구회

1. 연구경위

- 2020. 12. 09. 조례입법정책연구회 연구(2020. 12. 09. 회부)

2. 연구이유

- 「교육기본법」 및 「인성교육진흥법」에 따라 용진군민의 인성교육을 체계적으로 육성·지원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3. 주요내용

- 군수는 모든 군민의 인성교육 확대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함. (안 제4조)
- 군수는 인성교육의 확산과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인성교육을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지원체계를 구축하여야 함. (안 제4조)
- 군수는 인성교육 등에 대한 시행 및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함.(안 제6

조)

○ 군수는 가정 및 지역사회에서의 인성교육을 위한 용진군 인성교육지원 위원회를 설치. (안 제7조)

○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 (안 제8조)

○ 군수는 가정이나 지역사회에서의 인성교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보급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인성교육프로그램에 대한 주기적인 수요조사를 실시할 수 있음. (안 제10조)

○ 군수는 인성교육이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분야의 인성교육 전문 인력을 양성할 수 있음.(안 제11조)

○ 군수는 인성교육 발전 등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기관·단체 또는 개인에게 「용진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음. (안 제15조)

4. 연구의견

○ 조례 제정을 통하여 더욱 따뜻하고 온정 넘치는 지역발전을 조성하는 「용진군 인성교육정책」을 도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용진군 인성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육기본법」 및 「인성교육진흥법」에 따라 용진군민의 인성교육을 체계적으로 육성·지원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성교육”이란 자신의 내면을 바르고 건전하게 가꾸고 타인·공동체·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인간다운 성품과 역량을 기르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을 말한다.
2. “핵심가치·덕목”이란 예(禮), 효(孝), 정직, 책임, 존중, 배려, 소통, 협동 등의 마음가짐이나 사람됨과 관련되는 핵심적인 가치·덕목을 말한다.
3. “핵심역량”이란 핵심가치·덕목을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실천 또는 실행하는데 필요한 의사소통 능력이나 갈등해결 능력 등이 통합된 능력을 말한다.
4.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에 따른 인성교육은 용진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을 실시대상으로 한다.

제4조(군수 등의 책무) ① 용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모든 군민의 인성교육 확대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인성교육의 확산과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인성교육을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지원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③ 제3조에 따른 군 소속기관 등은 매년 인성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인성 친화적인 교육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가정과 학교 및

지역사회와의 유기적인 연계망 구축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인성교육 지원에 대하여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적용한다.

제6조(시행 및 지원계획 수립) ① 군수는 인성교육 등에 대한 시행 및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행 및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인성교육 진흥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과 지원에 관한 사항
2. 지역 인성교육 우수 사례 발굴 및 확산에 관한 사항
3. 가정 및 학교 밖 지역사회에서의 인성교육 실천 및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4. 지역의 인성교육에 필요한 재원조달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학교, 가정 및 지역사회와의 협력체계 구축 방안
6. 그 밖에 인성교육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제7조(인성교육지원위원회 설치) 군수는 가정 및 지역사회에서의 인성교육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웅진군 인성교육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인성교육 시행 및 지원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인성교육 관련 주요 시책 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인성교육 실천 및 확산을 위한 사항
4. 그 밖에 인성교육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웅진군 인성교육업무담당 과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웅진군 인성교육 업무담당 과장**

2. 학부모 관련 단체 또는 인성교육 전문기관에서 추천하는 사람
 3. 인성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9조(위원회의 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연 2회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④ 위원회의 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인성교육 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 ⑤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과 관계 전문가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인성교육의 지원 등) ① 군수는 가정이나 지역사회에서의 인성교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보급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인성교육프로그램에 대한 주기적인 수요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② 군수는 인성교육 프로그램의 구성 및 운용 등을 전문단체 또는 전문가에게 위탁할 수 있다.
- ③ 군수는 군이 보유하는 시설이나 자료에 대하여 인성교육을 위한 이용요청을 받은 경우 본래의 용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적극 협조할 수 있다.
- ④ 그 밖에 가정이나 지역사회에서의 인성교육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11조(전문 인력의 양성 및 활용) 군수는 인성교육이 체계적이고 지속적

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분야의 인성교육 전문 인력을 양성할 수 있다.

제12조(예산 지원) 군수는 인성교육 지원, 인성교육프로그램 개발·보급 등 인성교육 진흥과 이를 추진하는 관련 기관 및 법인·단체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인성교육의 홍보) 군수는 군민에게 인성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참여의지를 촉진시키기 위하여 군 홈페이지 등에 홍보하거나 캠페인 활동 등을 전개 할 수 있다.

제14조(협력체계 구축 등) ① 군수는 인성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법인·단체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 및 법인·단체 등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15조(포상) 군수는 인성교육 발전 등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기관·단체 또는 개인에게 「옹진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